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96-8265
~~745-9564, 743-9127, 743-9128,~~
FAX 742-8289 196-8266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 393-4662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 709-2282
대한성공회 정의실천시제단 / 736-6990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인권위원회 / 523-8609
민주화실천 기족운동협의회 / 763-2606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522-7284
불교인권위원회 / 725-0452
서울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 763-2544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 364-7782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수암위원회 / 743-912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인권위원회 / 277-644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764-0203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의 승리입니다.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화—권과 같은
좌경의식화된 핵심 문제학생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식화 과정과 조직활동 투쟁과정에서 상호연대의식 고취,
일체감 조성 및 조직이탈 방지 등을 위해서 '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권의 수사과정에서의
성모욕주장은 인간성의 침해를 빙자하여 대중의
혁명적 투쟁을 선동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권인숙씨 성고문사건에 대한 소위 '공안당국'의 분석 중에서)

피고인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를 맹신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상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로할 범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강기훈씨 담당검사 논고 중에서)

잠시 후면 검찰청으로 떠나게 될
지금의 제 심정은 진실하기에 떳떳하면서도
한편으로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과
무거운 마음이 교차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결백한 저에게 유서대필자,
자살방조범이라는 범죄자의 굴레를 씌우려드는
공권력에 맞서 제 양심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거대한 공권력에 의해 거짓과 비양심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무고한 개인이 권력의 힘에 의해
끝내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그런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강기훈씨 출두성명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의 승리입니다



내용은 바로 성서말씀의 인용이라는 변호사들의 항변을 듣고는 "아니다"라고 펄펄 뛰면서 그런 성경을 가져와 보라고 했다가 성서를 눈 앞에 갖다 대니까 멋져서 하면서 기소장에서 그 내용을 말도 없이 슬그머니 빼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성서를 우리는 하나님의 법(法)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워진 정의에서만 참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교육을 사랑의 채찍이라 부르며 불의한 행동을 폭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반영한 인간의 법과 질서, 그것을 책임맡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등 불의한 욕심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펑박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서는 바로 조작과 누명에 의한 의로운 이들의 억울한 죽음, 곧 순교자들의 외침과 기도를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들, 사제라는 것들, 어른이라는 것들, 예언자라는 것들'(미가 3, 9 이하 참조)이 거짓재판과 불의에 아합할 때 하나님의 정의, 곧 분노의 말씀이 무섭게 하늘로부터 내리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곧 민중의 힘입니다. '백성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vox populi, vox Dei)'라는 라틴어 격언은 바로 진실한 삶과 체험의 위대함을 강조한 성서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땅에 권력의 하수자로 전락한 검찰권의 폭력에 맞서 의로운 이들이 떨쳐 일어섰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조작과 불의 앞에서 분명히 "아니다!"라고 외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검찰이 사랑의 채찍으로 교화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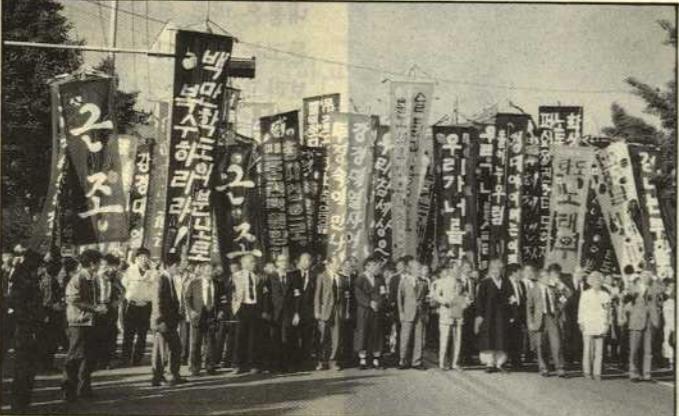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원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가 예언서 2, 1-2의 성서말씀입니다. 성서는 진리의 말씀이기에 거짓과 불의를 고발하여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재촉합니다. "유신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쳐대던 70년대 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 위의 성서말씀을 인용 했다가 검찰에 의해 구속되고 성서말씀이 그대로 기소장에 실려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 도중 위의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함세웅 신부

진실과 정의의 대장정

(1991년 4월~12월)

4. 26 명지대 강경대 학생, 시위 도중 백골단에 의해 타살.



4. 27 '고강경대 열사 살인폭력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 결성.

4. 29 '범국민 대책회의', 제1차 국민대회 개최, 전남대 박승희 학생 분신.

5. 1 안동대 김영균 학생 분신.

5. 4 제2차 국민대회(백골단 해체 선포의 날), 경원대 천세용 학생 분신.

5. 5 고 김기설, 방통대 '소리새벽' 회원 이지혜, 송국영에게 처음으로 분신 의사 밝힘.

5. 6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동조합 위원장, 안양병원에서 의문의 죽음.

5. 7 청와대 고위 당정회의, 잇따른 분신사건의 배후수사 방침 천명.

19 : 30, 김기설, 홍성은과 마지막으로 만남. 분신 결의 밝히며 수첩을 넘겨줌.

21 : 40, 이지혜, '범국민 대책회의' 상황실에 김기설의 분신결의 제보. 전민련은 이에 따라 곧바로 김기설을 찾기 시작함.

23 : 00, 북가좌동 자취방에서 김기설 찾음. '대책회의' 상황실에서 이보은을 추가로 보내 김기설을 보호, 분신 계획 만류. 이후 전민련은 연세대에 사람을 배치하여 분신방지 위해 노력.

5. 8 05 : 00, 김기설, 대학로에서 전화하고 오겠다며 사라짐.

있다).

정구영 검찰총장, 분신배후 수사 지시.

12 : 00, 홍성은, 연세대 '범국민 대책회의'에 와서 김기설 수첩 전달(이후 이 수첩은 대필시비가 있기까지 대책회의 자료보관함 속에 보관되어 있었음).

고 김기설 추모집회.

윤용하, '누가 분신을 배후조종한단 말인가, 노태우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퇴진하라'라고 외치며 분신.

전민련, 검찰의 요구로 김기설의 필적이 담긴 사회국 업무일지 제출.

고 김기설 장례식(모란공원).

오후 10시 서울지검 강력부, 홍성은 불법연행 압수수색 (15일 밤 검찰수사관과 잠깐 집에 들린 것을 제외하고 17일까지 약 100여시간 동안 불법수사).

강기훈 여자친구 이영미 강제연행.

고 강경대 학생 장례식(5월 정국에서 최대인파 참가). 이정순(천주교 신자), 장례행렬 선두가 지나던 연대앞 굴다리에서 분신 투신. 일부 언론, 이정순씨가 분신 당시 전민련 유인물 100여장을 안고 떨어졌다고 허위 보도함으로써 마치 전민련이 일련의 분신사건과 관련

06 : 30, 김기설, 신촌에서 홍성은에게 마지막 전화 (마지막까지 남아 열심히 살아라).

08 : 07, 김기설,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후 투신.

오전에 서강대 박홍총장 대 기자회견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5·12 김기설씨의 장례식 모습(서강대). 검찰의 유서대필시비로 인해 김기설씨가 분신으로 항거한 순수한 동기는 원전히 왜곡되어버렸다. 검찰은 바로 이 점을 노렸던 것이다.

이 있는 듯한 근거없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석간신문에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 K씨가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음을 대서특필.

'범국민 대책회의'의 명동성당 농성 시작, 강기훈 농성 합류.

5. 19 전민련, 김기설과 강기훈의 필적공개(수첩, 강기훈의 옥중편지)–전민련은 유서의 필적문제가 제기되자 그동안 '범국민 대책회의' 자료함에 방치되어 있던 김기설의 수첩을 찾아내어 공개. 전민련측은 검찰의 유서대필 주장이 김기설의 수첩공개로 일시에 무너져버릴 것으로 생각하고 곧바로 검찰에 제출. 그러나 검찰은 이때부터 '수첩조작'이라는 무서운 음모를 준비.

5. 21 4월 18일 김기설이 승의여전 학생들에게 써준 메모지를 본인들이 직접 공개.

5. 22 전민련, 성남 터사랑청년학우회 방명록, 이력서 공개. 특히 방명록은 각장에 여러 사람의 필체가 담겨 있는 것으로 김기설이 한정덕이라는 가명으로 서명한 유서 필체와 동일한 훌륭체 필적임.

전민련, 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 공개–이 방명록은 제3자인 한겨레신문 기자가 직접 입수한 것으로 유서

와 동일한 훌륭체 필적.

검찰, 한겨레신문이 필적감정을 의뢰한 사설감정원 압수수색.

5. 23 검찰, 전민련 관계자 8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발부 예정이라고 발표(강기훈을 유서대필자로, 전민련을 배후조직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여론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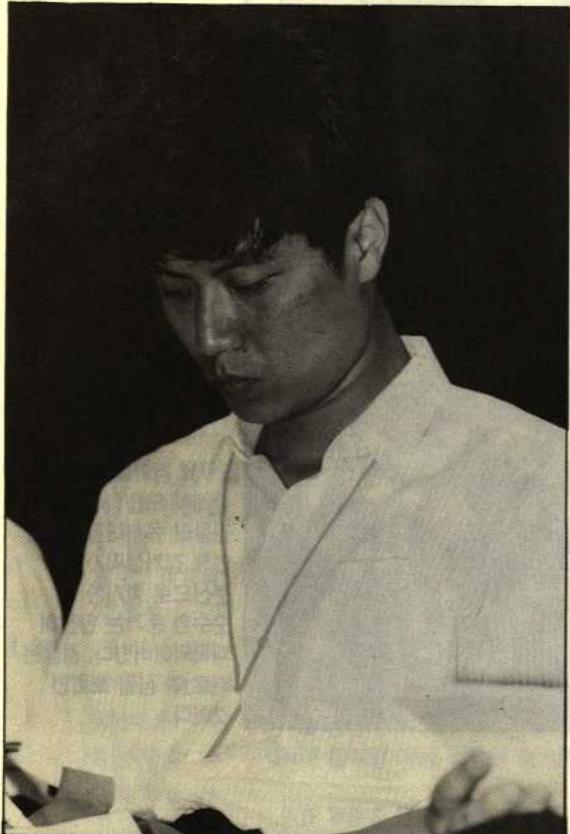
5. 24 전민련, 성남 민청련 상황일지 공개(김기설이 몸담고 있었던 성남 민청련의 활동일지로 수개월간의 활동상황이 거북되어 있음. 이 일지에는 김기설의 훌륭체와 정자체 두 가지 필적이 모두 발견됨으로써 정자체만을 김기설씨의 필적으로 주장해온 검찰의 주장을 뒤엎는 자료).

5. 25 검찰,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발표. 시위진압 과정에서 성균관대 김귀정 학생이 사망.

5. 26 검찰, 자살방조혐의로 강기훈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6. 7 강기훈, 김수환 추기경에게 자신의 결백과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편지보냄.

6. 18 성남에서 홍성은 은신처 발견, 취재기자 경찰에 연행.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회 구속. 보안관찰법과 짐시법



조사도 받기 전에 이미 자살방조자로 낙인 찍힌 채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 속에서도 담담한 표정을 잃지 않고 있는 강기훈씨(5월 20일 명동성당 기자회견 중).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사실은 검찰의 유서대필 주장에 대해 앞장 서서 반박해 온 것에 대한 보복구속.

6. 24 강기훈 검찰에 자진 출두. 강기훈은 자진 출두에 앞서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락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겠다”는 성명서 발표.

7. 2 검찰, 소위 ‘유서대필’ 배후관련 참고인 14인 전국 수배령.

7. 6 검찰, 새로운 대필용의자로 전민련 임무영부장 연행, 혐의가 없자 짐시법 등으로 보복구속.

7. 122 검찰, 강기훈 구속 기소, 사건 수사 발표.

7. 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의 필적감정 결과 발표.

8. 28 강기훈 1차 공판. 변호인단은 모두 진술에서 “형사소송 법상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는 이 사건 공소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강기훈은 모두 진술에

서 “유서대필 용의자로 몰린 지난 3개월 동안은 본인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였다”, “이번 유서대필 사건은 본인을 회생양으로 삼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정권의 비열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주장.

9. 11 2차 공판. 강기훈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검찰은 ‘유서대필을 시인하면 혁노맹사건 관련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회유에서부터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은 모두 공안관련 혐의로 집어넣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자백을 강요해, 나머지 사람들을 구해야 하겠다는 심정에서 차라리 거짓자백이라도 할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진술.
9. 25 3차 공판. 김기설 친척인 이재구에 대한 증인 신문. 이재구는 유서가 김기설의 필적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 국민학교 때부터 김기설을 만날 때마다 100여 차례에 걸쳐 김기설의 필체를 흉내내어 연습했다는 웃지 못할 내용을 증언.
10. 9 4차 공판. 국과수 문서실장 김형영에 대한 증인 신문.
10. 23 5차 공판에 이어 김형영에 대한 증인신문 계속.
11. 6 6차 공판. 홍성은 증인출두 거부. 변호인측 동우전문대 학내 폭력사건 관련 녹취록(홍성은과 김기설이 같은 노트에 녹취한 것)과 분신 당시 복사한 수첩 복사본(검찰의 수첩조작 논리를 뒤엎는 방증자료) 제출.
11. 7 7차 공판. 홍성은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측 요구로 비공개리에 진행된 공판에서 홍성은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강기훈이 검찰의 필적오인을 유도하기 위해 홍성은의 수첩에 김기설의 연락처를 적어주었다고 한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강기훈씨가 쓰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
11. 20 8차 공판. 변호인측 증인들의 신문. 변호인이 제출한 김기설의 필적과 관련하여 유서가 김기설 본인의 필적임을 증언.
11. 27 9차 공판.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증인신문(감정내용은 이 책자 후반에 전문을 공개함).
11. 28 10차 공판. 일본인 오니시 증인신문 계속.
12. 4 11차 공판. 검사,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강기훈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3년 구형. 변호인단, 장문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의 결백을 주장(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사회는 정의사회가 아닙니다).
12. 20 12차 공판. 재판부, 3년 징역형 선고.

강기훈 어머니 글

차등 없는 인권 세상이 되기를



우리나라에는 인권에도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유 없이 천여만원을 받아쓰고도 2~3일로 간단히 조사를 끝마칠 수 있는 국과수 김형영씨의 인권은 몇 등급이며, 돈은 고사하고 ‘안했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던, 그러면서도 19일 동안 갖은 회유와 모욕과 잠 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던 강기훈의 인권은 몇 등급일까?

수십 명의 증인의 증언과 그많은 증거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립’과 ‘과학’이라는 허울좋은 미명 아래 엉터리 감정을 한 김형영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사법부였습니다. 그러한 노골적인 편애에도 불구하고 국과수는 자체에서 끌어터진 추한 실상들을 만천하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싸안고 축소하려 하는 듯한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더러운 누명을 쓰고 8개월째 갇혀 있는 강기훈의 어머니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허위감정은 안했다니? 천 만원이란 돈이 그렇게 이유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까?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기훈이를 수사할 때 그 기세등등하고 서슬 퍼렇던 열정은 어디에 버렸습니까? 서른도 안된 한 청년은 수십 명의 검사, 수사관들이 19일 동안이나 닥달을 하더니 실타래처럼 얹혀 복잡하기 짝이 없는 국과수 사건은 관련자만도 10여 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무리지어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강기훈을 난도질하던 그 손이 김형영씨에겐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로 변했습니까?

땅에 떨어진 공신력을 제자리로 끌어올리는 길은 공정한 수사,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수사를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성장했다고 자부했던 자식이 당신들의 손에 의해 교활하고 파렴치한 자살방조범으로 만들어져 갈 때의 참담했던 심정을 그대들은 짐작이나 합니까?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사법부마저 당신들의 편이 되었을 때의 처절한 절망감을 알고 있습니까?

“진실은 꼭 밝혀진다”, “사필귀정이다.”

지난 9개월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어본 이 메아리 없는 절규가 언제까지나 허공에서만 맴돌지는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인권에 차등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강기훈 어머니 권태평

고개 숙인 판사

I. 사건의 배경

작년 4월 26일. 스무살도 채 못되는
명지대생 강경대군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백골단’에 맞아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커다란 분노의 파도를 일으켰으며 사흘 후에는 전남 대 박승희양이 항의의 분신을 하는 또 하나의 충격을 가져왔다. 꼭 무슨 일이 터지고야 말 것만 같은 흥흉한 분위기 속에서 제이, 제삼의 분신 사건이 잇따랐다. 5월 4일의 ‘백골단 해체 선포의 날’ 평화적 시위는 엄청 난 양의 최루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2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되었다. 이와같은 급격 한 정세변화는 정권을 이른바 ‘6공 최대의 위기’로 몰아갔던 것이다.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가 서강대 육상에서 분신, 투신한 것은 5월 8일, '5월정국'의 네번째 분신항거

① 노래우 정리를 되자해야 합니다.
민족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만을 안겨주는
지능의 정리를 꼭 라도 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우리에게 죽음과 아픔을
안겨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였다. 그는 옥상에 문제의 그 유서를 남겼다(아래 필적 참조).

김기설씨의 분신 직후 검찰은 현장 조사를 통한 사실증거 확보에 앞서 언론에 '배후세력에 의한 분신자살 조종'이라는 예단을 앞질러 발표했

다. 검찰은 이어 그 근거로 분신직후 정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의혹점을 지적했으나 그것은 하루도 채 안되어 모두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검찰은 일언반구의 해명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 예단은 분명히 검찰 자체 내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검찰의 '배후세력' 발표가 있기 전날 이미 청와대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배후 수사방침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초부터

지극히 정치적인 성격을 띤 것이다.
‘5월투쟁’의 열기는 점점 고조되어
지만 그 열기의 그늘에서 김기설씨

의 주변인물들이 하나씩 검찰에 강제 연행되기 시작했다. 김기설씨의 여자 친구인 홍성은씨는 연행되어 무려 100시간에 이르는 불법수사를 받았으며, 강기훈씨의 집이 검찰에 의해 3시간동안 수색을 당했다.

5월 18일은 고 강경대학생의 장례 행렬이 14일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 중심가 진입을 시도한 날이었다. 경찰의 저지선과 대치한 웅장한 장례행렬 가운데서 강기훈씨가 펼친 석간 <국민일보> 사회면에는 전민련 총부부장 K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려 있었다. 그날은 전국에서 64만명의 군중이 정권의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한 날, 이른바 '5월 투쟁'의 절정을 이룬 날이었다.

명동성당에서의 ‘유서대필 공방’은 치열했다. 그것은 여타의 모든 사건을 집어삼켜버릴 만한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의 의혹투성이인 죽음도, 거대한 시위도, 아니 그 강경대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그 자체마저도……. 배달되어온 신문을 손에 든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 보는 것은 정치기사도 시위에 관한 기사도 아닌 글씨 비교 도판이었다. 어제까지 노태우정권 탄도를 외치던 사람들은 유서 글씨와 나란히 실린 여러가지 종류의 글씨를 응시하면서 고개를 겨우뚱거렸다. 아니, 문맹자도 아닐 뿐더러 문장력도 좋고 달필인 사람의 유서를 왜

다른 사람이 대필해야 하는지의 상식적인 물음조차 잊은 채 사람들은 열심히 글씨를 쳐다보았다. '5월투쟁'의 열기는 급속히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한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초부터 검찰이 만들어낸 대결구도, 즉 <국가 권력 대 전민련>이라는 구도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은 거짓과 진실의 거대한 싸움에 다름이 아니었다.

II. 쓸아지는 필적 증거들

검찰은 이 때까지 두 차례의 필적
감정을 마쳐놓고 있었다. 1차 감정은
다음의 네 가지였다. 즉 ①유서, ②
“누님 우리 혜정이……”, ③주민등록
분실신고서, ④업무일지

② ㄱ ㅎ
우리 혜령이
— 절기의 주제로
— 삼촌 이설 —

③	(일부인)	
경기·설		주민등록 번호
		호 ~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안양시 흥�동 915-444-1111		

결과는 ①=④, ②=③, 그러나 유서와 ②, ③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정서와 속필 및 필기구에

따른 변회점을 알 수 없어 異同여부 논단 불가”였다. 이 결과 자체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異同여부 논단불가”를 멋대로 “상이 한 필적”이라고 해석하여 “유서와 업무일지 필적은 같았으나 김기설이 누나에게 선물한 책 표지필적(②)과는 달랐다.” 따라서 유서와 업무일지는 김기설씨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결론을 내렸고, 모든 신문에 유서와 ②를 여봐란 듯이 장식케 했다.

이것은 검찰의 교활한 여론조작이었다. 검찰이 일부러 쓰여진 연도를 밝히지 않은 이 책 속표지 필적(②)은 실은 김기설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1981년, 그러니까 10년전에 쓰여진 글씨였다 것이다.

년), ⑥김기설씨가 홍성은씨에게
준 낙서메모.

⑤ 2014년 1시 20일 월 2층 11시
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그림
등이 3층 후상기 합류를 했고
이 짐개를 통해 해서 밀고

⑥ 기획수사의 목표는
정부적인 사상적
해석은 같은 시기
- 1. 7. 1.

①과 ⑥이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놀랍게도 ⑤까지가 모두 동일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버린 것이다. 명동성당은 국과수의 감정에 대한 의혹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필적논쟁'에 있어서 검찰의 입각점은 끝까지 위의 1·2차 감정결과였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 내놓은 김기설 필적(②)이 유서(①)의 필적과 다르기 때문에 유서는 김기설이 쓴 것이 아니다. 유서와 강기훈의 진술서(⑤) 필적이 같기 때문에 유서는 강기훈이 썼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자는 국과수 감정을 검찰이 멋대로 해석한 데서 나온 결과요, 후자는 누가 육안으로 보아도 다르게 보이는 두 가지 필적을 '같다'고 한 미심쩍은 국과수의 감정에서 나온 결과였다. 이같은 잘못된 입각점을 고집한 검찰은 사건이 확대되면서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그 많은(20여종) 김기설 생전의 필적, 누가 보아도 유서와 똑같은 필적을 모조리 강기훈씨가 조작한 것으로 몰아버리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고역스러운 '필적논쟁'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승의여전에서, 성남에서, 원주에서, 수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그문서들을 검찰은 명동성당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강기훈씨의 '조작

품'으로 몰아갔다. "강기훈이 홍길동이란 말인가?" "그 문서들을 제공한 모든 사람들이 강기훈과 공범이란 말인가?" 이런 비난이 높아갈 무렵 검찰은 일방적으로 강기훈씨를 '용의자'가 아닌 '범인'으로 단정하면서

'필적논쟁'의 종결을 선언해버렸던 것이다.

강기훈씨의 결백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는 여러 문서들 중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⑦ ⑧ ⑨ 김기설 수첩

4월 날짜				수첩
22 월	23 화	24 수	25 목(카드)	
				전국민회총연맹 간접 79 한국총공장 과감 금리국총성동일 90
				상. 중집회장학원 한국도시봉사단 국. 보건체육협의회 전농상임(부회) 연대(부회)
7	7	7	7	
8	8	8	8	
9	9	9	9	
10	10	10	10	(1)
11	11	11	11	(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5. 276. 277. 278. 279.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5. 296. 297. 298. 299.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09. 310. 311. 312. 313. 313. 314. 315. 316. 316. 317. 318. 318. 319. 319. 320. 320. 321. 321. 322. 322. 323. 323. 324. 324. 325. 325. 326. 326. 327. 327. 328. 328. 329. 329. 330. 330. 331. 331. 332. 332. 333. 333. 334. 334. 335. 335. 336. 336. 337. 337. 338. 338. 339. 339. 340. 340. 341. 341. 342. 342. 343. 343. 344. 344. 345. 345. 346. 346. 347. 347. 348. 348. 349. 349. 350. 350. 351. 351. 352. 352. 353. 353. 354. 354. 355. 355. 356. 356. 357. 357. 358. 358. 359. 359. 360. 360. 361. 361. 362. 362. 363. 363. 364. 364. 365. 365. 366. 366. 367. 367. 368. 368. 369. 369. 370. 370. 371. 371. 372. 372. 373. 373. 374. 374. 375. 375. 376. 376. 377. 377. 378. 378. 379. 379. 380. 380. 381. 381. 382. 382. 383. 383. 384. 384. 385. 385. 386. 386. 387. 387. 388. 388. 389. 389. 390. 390. 391. 391. 392. 392. 393. 393. 394. 394. 395. 395. 396. 396. 397. 397. 398. 398. 399. 399. 400. 400. 401. 401. 402. 402. 403. 403. 404. 404. 405. 405. 406. 406. 407. 407. 408. 408. 409. 409. 410. 410. 411. 411. 412. 412. 413. 413. 414. 414. 415. 415. 416. 416. 417. 417. 418. 418. 419. 419. 420. 420. 421. 421. 422. 422. 423. 423. 424. 424. 425. 425. 426. 426. 427. 427. 428. 428. 429. 429. 430. 430. 431. 431. 432. 432. 433. 433. 434. 434. 435. 435. 436. 436. 437. 437. 438. 438. 439. 439. 440. 440. 441. 441. 442. 442. 443. 443. 444. 444. 445. 445. 446. 446. 447. 447. 448. 448. 449. 449. 450. 450. 451. 451. 452. 452. 453. 453. 454. 454. 455. 455. 456. 456. 457. 457. 458. 458. 459. 459. 460. 460. 461. 461. 462. 462. 463. 463. 464. 464. 465. 465. 466. 466. 467. 467. 468. 468. 469. 469. 470. 470. 471. 471. 472. 472. 473. 473. 474. 474. 475. 475. 476. 476. 477. 477. 478. 478. 479. 479. 480. 480. 481. 481. 482. 482. 483. 483. 484. 484. 485. 485. 486. 486. 487. 487. 488. 488. 489. 489. 490. 490. 491. 491. 492. 492. 493. 493. 494. 494. 495. 495. 496. 496. 497. 497. 498. 498. 499. 499. 500. 500. 501. 501. 502. 502. 503. 503. 504. 504. 505. 505. 506. 506. 507. 507. 508. 508. 509. 509. 510. 510. 511. 511. 512. 512. 513. 513. 514. 514. 515. 515. 516. 516. 517. 517. 518. 518. 519. 519. 520. 520. 521. 521. 522. 522. 523. 523. 524. 524. 525. 525. 526. 526. 527. 527. 528. 528. 529. 529. 530. 530. 531. 531. 532. 532. 533. 533. 534. 534. 535. 535. 536. 536. 537. 537. 538. 538. 539. 539. 540. 540. 541. 541. 542. 542. 543. 543. 544. 544. 545. 545. 546. 546. 547. 547. 548. 548. 549. 549. 550. 550. 551. 551. 552. 552. 553. 553. 554. 554. 555. 555. 556. 556. 557. 557. 558. 558. 559. 559. 560. 560. 561. 561. 562. 562. 563. 563. 564. 564. 565. 565. 566. 566. 567. 567. 568. 568. 569. 569. 570. 570. 571. 571. 572. 572. 573. 573. 574. 574. 575. 575. 576. 576. 577. 577. 578. 578. 579. 579. 580. 580. 581. 581. 582. 582. 583. 583. 584. 584. 585. 585. 586. 586. 587. 587. 588. 588. 589. 589. 590. 590. 591. 591. 592. 592. 593. 593. 594. 594. 595. 595. 596. 596. 597. 597. 598. 598. 599. 599. 600. 600. 601. 601. 602. 602. 603. 603. 604. 604. 605. 605. 606. 606. 607. 607. 608. 608. 609. 609. 610. 610. 611. 611. 612. 612. 613. 613. 614. 614. 615. 615. 616. 616. 617. 617. 618. 618. 619. 619. 620. 620. 621. 621. 622. 622. 623. 623. 624. 624. 625. 625. 626. 626. 627. 627. 628. 628. 629. 629. 630. 630. 631. 631. 632. 632. 633. 633. 634. 634. 635. 635. 636. 636. 637. 637. 638. 638. 639. 639. 640. 640. 641. 641. 642. 642. 643. 643. 644. 644. 645. 645. 646. 646. 647. 647. 648. 648. 649. 649. 650. 650. 651. 651. 652. 652. 653. 653. 654. 654. 655. 655. 656. 656. 657. 657. 658. 658. 659. 659. 660. 660. 661. 661. 662. 662. 663. 663. 664. 664. 665. 665. 666. 666. 667. 667. 668. 668. 669. 669. 670. 670. 671. 671. 672. 672. 673. 673. 674. 674. 675. 675. 676. 676. 677. 677. 678. 678. 679. 679. 680. 680. 681. 681. 682. 682. 683. 683. 684. 684. 685. 685. 686. 686. 687. 687. 688. 688. 689. 689. 690. 690. 691. 691. 692. 692. 693. 693. 694. 694. 695. 695. 696. 696. 697. 697. 698. 698. 699. 699. 700. 700. 701. 701. 702. 702. 703. 703. 704. 704. 705. 705. 706. 706. 707. 707. 708. 708. 709. 709. 710. 710. 711. 711. 712. 712. 713. 713. 714. 714. 715. 715. 716. 716. 717. 717. 718. 718. 719. 719. 720. 720. 721. 721. 722. 722. 723. 723. 724. 724. 725. 725. 726. 726. 727. 727. 728. 728. 729. 729. 730. 730. 731. 731. 732. 732. 733. 733. 734. 734. 735. 735. 736. 736. 737. 737. 738. 738. 739. 739. 740. 740. 741. 741. 742. 742. 743. 743. 744. 744. 745. 745. 746. 746. 747. 747. 748. 748. 749. 749. 750. 750. 751. 751. 752. 752. 753. 753. 754. 754. 755. 755. 756. 756. 757. 757. 758. 758. 759. 759. 760. 760. 761. 761. 762. 762. 763. 763. 764. 764. 765. 765. 766. 766. 767. 767. 768. 768. 769. 769. 770. 770. 771. 771. 772. 772. 773. 773. 774. 774. 775. 775. 776. 776. 777. 777. 778. 778. 779. 779. 780. 780. 781. 781. 782. 782. 783. 783. 784. 784. 785. 785. 786. 786. 787. 787. 788. 788. 789. 789. 790. 790. 791. 791. 792. 792. 793. 793. 794. 794. 795. 795. 796. 796. 797. 797. 798. 798. 799. 799. 800. 800. 801. 801. 802. 802. 803. 803. 804. 804. 805. 805. 806. 806. 807. 807. 808. 808. 809. 809. 810. 810. 811. 811. 812. 812. 813. 813. 814. 814. 815. 815. 816. 816. 817. 817. 818. 818. 819. 819. 820. 820. 821. 821. 822. 822. 823. 823. 824. 824. 825. 825. 826. 826. 827. 827. 828. 828. 829. 829. 830. 830. 831. 831. 832. 832. 833. 833. 834. 834. 835. 835. 836. 836. 837. 837. 838. 838. 839. 839. 840. 840. 841. 841. 842. 842. 843. 843. 844. 844. 845. 845. 846. 846. 847. 847. 848. 848. 849. 849. 850. 850. 851. 851. 852. 852. 853. 853. 854. 854. 855. 855. 856. 856. 857. 857. 858. 858. 859. 859. 860. 860. 861. 861. 862. 862. 863. 863. 864. 864. 865. 865. 866. 866. 867. 867. 868. 868. 869. 869. 870. 870. 871. 871. 872. 872. 873. 873. 874. 874. 875. 875. 876. 876. 877. 877. 878. 878. 879. 879. 880. 880. 881. 881. 882.

⑩ 01 (21)
· 1 주기적인 재방류 / 물의 대체
· 6시 ~ 11시 25 층단 통과.
" 11시 ~ 6시 25 층단 통과.
6시 11시 재방류 단계

- 4. (21).
2107.
· 6시 (25 층단 통과)
· 6시 ~ 11시 25 층단 통과
11시 ~ 6시 (25 층단 통과)

이것은 김기설씨가 4월 18일, 동우 전문대 문제를 위한 목요예배를 마치고 숭의여전 이보령의 3명의 학생들이 직접 보는 데서 자신의 수첩을 보면서 적어준 것으로서 학생들은 이것을 총학생회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명동성당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이 글씨는 김기설씨 수첩(자료 ⑦윗부분)에 적힌 것과 똑같다.

⑪ 강기훈씨 옥중편지

85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우체국 소인과 교도소 직인, 그리고
강기훈씨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뒷면
에 ‘검열필’ 도장과 본문이 나오는,
교도관 입회하에 작성된 편지이다.
육안으로도 유서 필적과 다른 이 증거
를 검찰은 제출요구조차 하지 않고
“진짜 강씨 편지인지 믿을 수 없다”
(5. 23 조선일보)며 일축해버렸다.

⑫ 성남 터사랑청년학우회 창립대회
방명록.

김기설씨가 이 창립대회에 참석하면서 한정덕이라는 가명으로 기록한 것. 연합통신 기자가 성남 현지 취재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전민련 발표에 앞서 보도한 것으로 그 신빙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기설씨가 기재한 면에는 다른 여러 사람의 격려사와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만용일 것이다.

⑬ 전교조 원주지회 개소식 방명록
이 자료는 전교조 원주지회에서
직접 한겨례신문사에 보내 공개한
필적으로 원본이 한겨례신문사에
보관되었다. 전교조 강원지부 교과위
원장 곽대순씨가 직접 공개증언(5.
25. 한겨례)하고 있다.

⑪ 고학 세대에 학사를 했지만, 그 학위는 ~~은~~으로 채지 않고 있었는데 그 학위에는

사건에 연루되어 2년형을 받은 강기 훈씨가 옥중에서 가족에게 보낸 20 통 가량의 편지. 검찰은 가택수색을 하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옥중편지는 봉함엽서로 겉면에

⑯ 성남 민청련 업무일지 및 상황
일지
89년 9월 22일에서 90년 1월 31
일 사이에 김기설씨가 성남 민청련
교선부장으로 있으면서 쓴 일지. 그의

전현철 - 거주교자원 노동조합 서남지회 - 2

⑫ 청진은이 빛나는 가수라 뜨거운
연정연이 소중히 향하고 내일은
날뛸 수 있으니!

장일부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선남지역위원회 위원장

“침략이 서야 조국이 살라”

체계학주의의 단점을 진실로 죽 하드립니다.

13. 2011년 12월 10일 등록

자수·민수·종인의 시시로

웃아라 터사랑 정부 악수의

인증해석학의 핵심은

(서남미주6국 고속도로 현장다)

영남부 해자

가장에 나의 고통에 흡사한꺼마
—설희—

⑯ 이땅의 자주·민수·통일의
기 청룡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개헌민족 민주운동 연습 —

사회학부장 김기설

14. 나 있는 가을 한 단

2. 날씨 민족 한民族
한국 민족 한民族 나
서원 우 서원 기
나는 기 한국 민족 이란 는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정자체와 흘림체가 쓰여져 있으며
사인펜, 볼펜, 세라믹펜 등 다양한
필기구가 사용되어 있다.

⑯ 채무각서
김기설씨 수첩 내용에서 그에게
고유한 스케줄을 찾고 있던 전민련은
4월 25일 3시~4시란에 기록된 '원소
삼백'의 뜻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
다(자료 ⑦ 참조).

명동성당 농성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어떤 젊은이가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를 찾아왔다. 그는 김기설씨에게 300만원을 꾸어주고 2월 8일까지 갚기로 한 채무각서를 받았으나 김기설씨가 그때까지 갚지 않고 다시 4월 25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김기설씨가 죽어버리자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원석'이었다. 이 채무각서의 필적은 유서필적과 똑같다.

서준식씨는 이 각서의 공개가 고인을 욕되게 할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이것을 전민련 실무자에게 맡겨놓고 구속되었다. 이것이 나중에 강기훈씨 8차공판 때 재판부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것을 '조작'으로 판단했다. 조작하려면 왜 하필이면 채무각서를 조작하겠는가?

⑯	1989년 9월 26일 화요일	
전국 및 지역 동향 지역	• 지역특기(오전 10시) 노선 • 공대기 대로자 실무자 연수	
동향	"터사랑" 여성제 개막식	(<u>민족</u> , 10월 : 1,500) > (<u>민족</u> , 10월 : 200)
상근자	◎ 월세 낭비. ◉ 사무실 운용 규칙 마련	
직원	/- 인하병원 노보안전 방문	# 협동반(크루 주시). 큰 글씨가 김기설씨의 필적

⑯ 각 서.

한번씩 기미 일주삼병만
원을 2월 18일까지 약제까지
가져옵니다.
1895년 2월 18일
여러한 처벌은 감수할수는
아직 솔입니다.

1심 재판부가 강기훈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과정에서 국과수는 그 감정의 비과학성·비공정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김형영은 이번 국과수 허위감정 의혹사건의 '주인공'으로 현재 구속중에 있다.

1. 감정기준의 모호함.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은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유서감정에서 동일한 필적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동일필적 비율이 70% 이상일 때, 상이한 필적이라 판단할 때는 동일필적 비율이 45% 이하일 때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위와 같은 확률상의 비율을

⑯ 속초 동우전문대 학내 폭력사건
녹취록.

동우전문대 사건 당시 현지조사를 하면서 녹음한 것을 나중에 글로 풀어 쓴 것. 서준식 인권위원장이 김기설씨의 녹취원고(연필로 쓰여져 있음)가 미흡하여 다시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원고 위에 스스로 검은 색 하이테크펜으로 가필을 한 것으로서 서준식 씨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김기설씨가 홍성은씨와 함께
작업을 하여 그 녹취노트에는 홍씨의
글씨로 된 부분도 들어 있어 홍씨가
법정에서 그 노트의 글씨가 김씨의
것임을 확인했음에도 재판부는 홍성
은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III.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강기훈씨는 과연 유죄인가?(1)-

감 ⑯ - 사람 개개인을 대야 한다.

기호학: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개인적 집단적 대기(對)를 들을 수 있겠지

답: 반복된 물들이를 무수형, 미래형, 자녀형식

동아리는 기도하고 헌신하며 속마음을 풀어야 한다.

누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다음과 같은 대가는 안하고 있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번역은 안된다.

~~번역~~ 번역은 개인들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전야 한다.
번역은

나는 3월간 213회 전시회에서 1회 전시회마다 1회는 ~1회는
다음과 같은 2-16회에는 5회, 6회 일정 7.1회 일정은 6회
모두 개설되어 막이 풀려버렸다.

‘어디서 나오느냐……, 모두 꺼져버려……’의 작은 글씨는 서준식씨가 가필한 부분.

얻기 위한 사전 조사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출한 감정서에는 어디에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그의 감정소견서는 단지 “현미경, 확대투영기, 비교확대기, 고정밀 비교확대 투영기 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필의 구성과 배자의 형태…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필의 특성 및 숙련과 미숙련 차이, 자음과 모음의 특징, 개인의 특성, 잠재습성 등을 주시검사하였음”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양식서에 간단한 감정결과와 10매 가량의 글씨 확대사진이 붙여져 있을 뿐 구체적인 감정과정이나 특정 글씨에서 이런 감정사항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다. 그는 법정에서 이번 감정에서 이 비율이 어떤 필체에서 몇%로 나타나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었다. 김형영의 경우 감정의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니시 와 달리 세부사항에서의 '트집 잡기' 를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법정에 서의 김형영 증인신문 과정은 그와 검사가 부단히 연락을 취하면서 그가 검찰의 의도에 따라 감정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 군데 군데 있다. 즉 그가 "검찰을 비롯한 누구의 조언이나 설명을 들은 바 없이 양심에 따라" 감정했음을 의심케 하며 검사의 주문에 따라 결론부터 정해놓고 동일필적 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비슷해 보이는 글씨를, 상이한 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은 달라보이는 글씨를 화대 촬영 하여 비교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다.

2. 업무일지는 조작되었는가?

-김형영의 위증-

업무일지(④)는 고 김기설씨가 속해 있는 전민련 사회국에서 중요한 행사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던 문서이다. 김기설씨가 분신자살하자 검찰은 전민련측에 김기설씨의 필적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전민련은 특별한 생각없이 김기설씨와 관계 있던 사회국 업무일지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업무일지가 유서필적과 같다며 국과수의 감정통보를 받자, 업무일지를 강기훈씨가 마치 김기설씨가 쓴 것처럼 조작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업무일지는 전민련 사회국원 3인이 작성한 것이었다. 총무국 소속인 강기훈씨는 물론 검찰까지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6월 26일 강기훈씨가 자진출두한 후 조사 때마다 유서와 업무일지를 놓고 양자가 동일인이 쓴 것이고, 유서필체가 강기훈씨의 필체와 같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업무일지도 당연히 강기훈씨가 조작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다가 91년 7월 5일 뜻밖에도 업무일지가 세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즉 검사의 반복된 추궁에 업무일지를 자세히 살펴보던 강기훈씨가 업무일지의 첫째 장은 전민련 동료인 이동진씨의 글씨이고, 둘째 장의 중간에 쓰여진 “4/19 4.19혁명기념대회 준비”·임무영씨의 글씨임을 발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앞 장이 이동진씨, 둘째 장의 일부가 임무영씨가 쓴 것으로 밝혀지자 검찰은 몹시 당황했다. 이미

이때는 국과수가 업무일지는 유서와 동일인이 쓴 것으로 간주한 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검찰은 이번에는 임무영씨를 대필 혐의자로 보고 연행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 시점에 이르면 검찰은 업무일지가 강기훈씨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업무일지는 강기훈씨의 결백을 밝혀주는 가장 객관적이고도 합당한 자료가 되어버렸다.

이와 관련하여 강기훈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하루는부장검사가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승의여전 학생들이 김기설의 필적이라 하여 가져온 메모와 무슨 노트를 책상에 내던지며 ‘봐라, 똑같지 않느냐’라고 소리쳐서 그 노트를 보니까 임무영의 노트였고, 육안으로 보기에 승의여전 메모의 글씨와 너무나 같아서 한동안은 ‘임무영이 유서를 대필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때 검찰 스스로도 강기훈씨에게 유서대필 혐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임무영씨를 유서대필의 진범으로 단정하고 ‘현상금을 걸고’ 잡으려다녔다. 결국 임무영씨는 7월 6일 강제 연행되어 사실상의 유서대필 피의자로 만 이틀동안 혹독한 신문과 추궁을 당해야 했다. 이때는 검찰이 이미 5월에 국과수 감정결과를 근거로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공표하고 난 훨씬 후였다. 그러나 결국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자 임무영씨를 집시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해버렸던 것이다.

결국 업무일지는 조작된 것이 아니었다.

었다.

검찰 주장대로 동일필적으로 꾸며 어떻게든 유서와 같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3인의 필적이 들어있는 것을 김기설씨의 필적으로 제출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이 만든 올가미에 다시 한번 스스로가 걸려들고 만 것이다. 국과수는 “유서와 전민련의 업무일지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 감정했다.

이에 대해 김형영은 처음부터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해 작성된 것을 검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유서와 동일한 필적이 업무일지에 있으나에 주안을 두었고, 업무일지에 다른 사람의 필적은 감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정서에서는

‘봐라, 똑같지 않느냐’라고 소리쳐서 그 노트를 보니까 임무영의 노트였고, 육안으로 보기에 승의여전 메모의 글씨와 너무나 같아서 한동안은 ‘임무영이 유서를 대필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형영의 이 말은 명백한 위증이다. 왜냐하면 검찰도, 국과수도 처음 업무일지를 건네받고부터 감정의뢰 할 때까지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7월 4일까지 강기훈씨에게 업무일지를 들이대며 ‘업무일지를 네가 김기설이 쓴 것처럼 조작한 것 아니냐’고 그토록 자백을 강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3인이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하다고 감정했다는 김형영의 증언은 업무일지에 의해 돌연히 드러난 사실을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검찰과 국과수의 사전담합에 의한 명백한 위증인 것이다.

3. 수첩은 조작되었는가?

5월 20일, 전민련이 검찰에 수첩을 제출 (Ⅱ. 쏟아지는 필적 증거들. 각각, 김기설 수첩 ⑦⑧⑨ 참조)한 직후부터 검찰은 이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처 감정이 실시되기도 전이었다. 그러다가 검찰이 고역스러운 ‘필적 논쟁’에서 결정적으로 밀리게 되었을 무렵 (Ⅱ. 쏟아지는 필적증거들 참조)인 5월 25일, 즉 성균관대 김귀정 양이 죽은 바로 그 날에 검찰은 국과수의 절취선 감정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발표해버림과 동시에 강기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수첩이 강기훈씨가 쓴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찾아낸 것이 바로 수첩 절취선이었다. 국과수의 수첩절취선 불일치 판정은 수첩에서 떨어져 나간 면수가 몇 장이고 남아있는 잔류부분은 몇 장인지, 떨어져 있는 부분의 순서와 대조할 남아 있는 잔류부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김형영은 법정에서 변호인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다. 단지 절취선 부분을 확대한 사진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국과수의 감정이 그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검찰은 수첩을 강기훈이 썼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과수의 허위감정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IV. 홍성은씨의 진술

-강기훈씨는 과연 유죄인가?(2)-

1심재판부가 강기훈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홍성은씨의 진술이었다.

홍성은씨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 엄청난 정치적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참담하게 상처 입은 이 사건의 대표적 희생자 중 한 사람이다.

홍성은씨는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에게 소개시켜준 단국대 후배이다. 홍성은씨는 김기설씨의 분신 전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5월 13일 검찰에 불법 연행 5월 17일까지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홍성은씨는 처음(검찰 1차 진술서)에는 추호도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불법감금 당시 되는 날에 홍성은씨의 진술이 의혹과 혼돈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극적으로 변해감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홍성은씨는 왜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는가?

홍성은씨가 유서가 대필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검찰이 강기훈씨의 필적이라고 제시한 문서가 너무도 유서와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 문서는 강기훈씨의 집에서 검찰이 압수한 ‘수신 : 김정훈, 발신 : 김명훈’으로 된 것이다. 홍성은씨는 “유서와 이 문서가 가장 확실하게 비슷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검찰 또한 이 문서를 자체 감정을 통해 유서와 동일하다며 수십장의 사진을 찍어 사진첩을 만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서는 강기훈씨의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졌고, 검찰도 나중에 이를 시인했다.

검찰이 의도했든 아니면 오인했든간에 홍성은씨는 강기훈씨가 쓴 것이라며 제시된 이 문서로 인해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을 하게 된 것이다.

홍성은씨는 이때부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의혹과 혼돈 속에서 강기훈씨와의 모든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홍성은씨의 왜곡된 의식변화 과정은 검사의 집요한 유도 신문과 강요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홍성은씨의 진술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1. 5월 7일 밤의 전화

홍성은씨는 김기설씨가 분신하기 전날인 5월 7일 저녁 김기설씨와 만난 후에, 강기훈씨에게 전화를 했다. 당시 홍성은씨는 강기훈씨가 전화를 받자 “기훈이 형, 왜 사무실 안나왔느냐,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기에 아마도 5월 5일에 학교 동문인 김진수씨 생일모임에서의 과음으로 인한 실수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괜찮다”고 말한 뒤 “기설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 달라”며 김기설씨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분신자살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인 홍성은씨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강기훈씨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강기훈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홍성은씨는 왜 강기훈씨에게 전화를 했을까? 홍성은씨는 “내가 죽으면 우리집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강기훈씨에게 전화하여 알려주라”는 김기설씨의 부탁이 있었

V. 상처투성이가 된 1심 재판

1. 그물로 구름 잡는 '공소장'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자살방조의 구체적 과정이나 유서대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에 관해 그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알듯 모를듯 한 아리송한 계변으로 검찰 공소의 적법성을 인정해 주었다. 백보 만보를 양보하여 강기훈씨가 설사 유서를 대필했다 하더라도 남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경위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서대필 사실만으로 자살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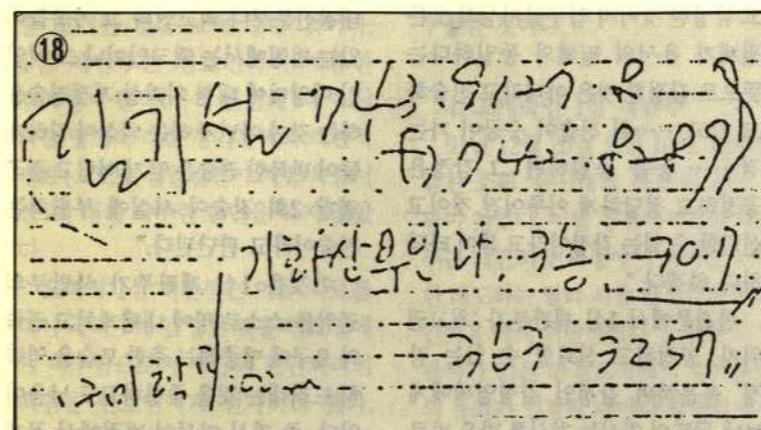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스스로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의 권리를 포기해버린 채 검찰측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2. 사법부의 권위에 스스로 면칠한 1심 재판부

검찰이 강기훈씨에 대한 유서대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끌어낸 증거와 주장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같이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억지와 논리적 비약이 결합되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차 있다.

진실에 이르는 길은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이를 왜곡하는 일은 복잡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억측에 입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사건은 폐를 위해 전민련 관련자들이 대책회의를 가졌다.



기, 검찰의 노련한 유도신문, 유서와 비슷한 다른 사람의 필적을 강기훈씨의 것으로 생각한 필적 오인, 자신에게 학력을 속인 김기설씨에 대한 배신감, 유서를 강기훈씨가 썼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등이 교차하는 탈진한 상태에서 진술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홍성은씨는 7차 공판에서 "수첩의 전화번호 부분은 현재 누가 썼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5월 10일 강기훈씨가 쓰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3. 홍성은씨가 제출한 메모 (자료⑥ 참조)

홍성은씨는 "그때 나의 마음은 패배와 좌절로 어둠과 연기로 자욱하여....."로 시작되는 김기설씨의 메모를 검찰에 제출한다. 이 메모는 김기설씨가 1991년 2월 18일 10:00경 「슈베르트」 카페에서 "내가 낙서한 것인데 잘된 것 같다. 읽어보라"며 홍성은씨에게 준 것이다. 검찰은 이 필적이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 유서와 동일필적으로 판명되자 홍성은씨로부터 "김이 자기 글씨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다만 자기가 잘쓴 글이라 생각한다며 읽어보라"고 준 것이라는

1심 재판부는 결국 이러한 모든 상상을, 그리고 홍성은씨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불법연행 닷새째에 홍씨가 했던 진술만을 채택해버렸던 것입니다.



홍성은씨가 김기설씨 분신 당일(5월 8일)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
검찰조사를 받은 후 묘연해진 홍성은씨의 소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시점(5월 23일)에 게재된 기사.

유서쓰러 집에 가야 한다"며 헤어져 말렸지만 오히려 마음편하다"며 말했다

여자친구洪씨 「유서 攻防」전 인터뷰내용

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로 이 부탁때문에 늦은 밤에 강기훈씨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화가 왜 강기훈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가?

검찰은 공소장에서 강기훈씨가 김기설씨가 분신하기 전부터 이를 알고 김기설씨 사후 모든 문제를 마무리함으로써 분신결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 주장대로 만일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장례문제들을 책임졌다면 적어도 김기설씨의 가족관계나 최소한 연락처는 알고 있었어야 타당한 주장이 된다.

그러나 홍성은씨의 전화는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집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강기훈씨가 분신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유서를 대신 써준 일도 없고, 더 더욱 자살을 방조한 사실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2. 홍성은씨의 수첩에 써준 김기설 씨의 전화번호

홍성은씨는 검찰에 연행된 첫 날(1991년 5월 13일) 조사에서 자신의 수첩을 제시하면서 3.20 메모란 부근의 글씨와 약도, 모눈종이 부분에 쓰여진 "김기설 743-9128, f# 742-8289"는 김기설씨가 써준 것이라 진술했다.

그런데 5월 17일 조사에서는 홍성은씨는 위 전화번호 기재부분은 김기설씨가 아니라 강기훈씨가 5월 10일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홍성은씨는 연이은 밤샘조사와 공포분위

- 업무일지가 조작되었다.
- 수첩이 조작되었다.
- 교도소 검열필 도장이 찍힌 강기훈씨의 편지를 믿을 수 없다.
- 일본인 감정가인 오니씨의 감정은 믿을 수 없다.
- 홍성은씨의 1차 검찰조사와는 유도된 2차 진술조사.

검찰은 이 모든 억측과 상상력의 산물들을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의 눈을 현혹시켜 왔다.

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친절하게도 일일이 설명을 덧붙여 인정해 주면서, 국과수 감정에 대한 변호인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과수를 변호했다.

“①……이 사건 필적감정에 있어 김형영 등 감정인들이 검찰의 압력을 받아 그 의도대로 감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김형영은 검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압력을 받음이 없이 소신껏 감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필적감정의 책임감정인인 김형영은 현재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으로 재직하면서……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것이 한 건도 없었으며, ……동인을 한글 필적감정의 최고권위자라 볼 수 있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이 사건 필적감정이 세심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④ 업무일지 감정에 있어서도…… 동일필적이 있느냐에만 주안을 두고 감정한 결과 동일필적이 발견되어 유서와 업무일지의 필체가 동일하다

고 감정한 것이지 업무일지상의 모든 필체가 유서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뜻으로 감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감정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것은 1심 재판부가 ‘최고권위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운운하며 감정인 김형영씨에게 보낸 극도의 친사는 친사를 받은 바로 그 장본인이 최근 국과수의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인해 구속됨으로써 무색하게 되어버렸다.

또 1심 재판부는 홍성은씨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진술 당시의 상황과 전후 과정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검찰측의 해괴한 논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이 2차 진술(홍성은씨가 검찰에서 받은 2차 진술조사—홍성은씨의 수첩에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었다는 진술, 검찰은 이것을 강기훈씨가 검찰의 필적오인을 유도하기 위해 써준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홍성은은 1차 진술시 이 수첩의 메모를 김기설의 필적이라며 그것이 김기설씨의 것임을 증언하였다. 그 증인들은 대부분이 강기훈씨를 소위 ‘유서사건’ 이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자료의 실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엉갈린다든가, 자료의 제출시기 등 사소한 사항을 문제삼아 모든 증거를 배척해버렸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증거배척의 이유로 이 자료들과 유서를 대비한 필적감정 결과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중한 사법적 판단기능

대질신문시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있는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나 그 애인인 이영미에 대한 의리상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 번복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결국 검찰 2회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을 포기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김기설씨 필적(특히 훌림체)과 유서와는 명백히 다른 강기훈씨의 객관적 자료(교도소 검열필인이 찍힌 옥중서신)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심 재판부는 이들 자료를 다시 국과수에 감정할 것을 변호인에게 촉구함으로써 자신의 판단회피의 책임을 변호인에게 전가하려 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는 명백히 허위감정을 했음이 드러났고, 이를 감추기 위한 위증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과수는 다시 감정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국과수 외의 공인감정기관이 없다면 서 생선은 고양이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4. 고개숙인 1심 재판부

91년 12월 20일 오전 10시, 12회에 걸친 소위 ‘유서대필 사건’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재판의 전과정에서 보여준 근엄한 태도와는 달리 시종 방청석과 피고인석을 애써 외면하였다. 노원욱 부장판사가 읽은 판결요지에서 강기훈씨의 유죄가 인정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전에는 방청석의 소란에 대해 유난히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재판부가 이날만큼은 묵묵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갈 뿐이었다. 두 명의 배석판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예 고개를 숙인 채 들 줄을 몰랐다. 또한 부장판사 노원욱은 재판의 말미에서 “우리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절대적 진리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타난 증거로 판단할 때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공판이 끝난 후에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제3자가 나타나 내가 유서를 썼다고 양심선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진실을 밝히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강기훈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그의 외마디 항변은 방청석에서 터져나온 분노에 찬 함성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날 어느 일간지는 강기훈씨의 외마디 항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관둬, 거지같은 ○들아! 그따위 재판은 집어 치워!”(동아일보)

이는 강기훈의 항변만이 아닌 기자를 포함한 모든 방청객, 아니 강기훈의 양심과 진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1988.6.18 제3종우편물(가)금인가]

제1113호

신문

강기훈씨 선고공판정 이모저모

퇴정하다 알수없는 외마디

○…재판장인 노원욱 부장판사는 이날 20분가량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판결요지를 낭독하고 형량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석의 강기훈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시종 고개만 숙인 채 무거운 표정.

법정에 들어 설 때부터 줄곧 침묵을 지 키던 강씨는 재판장이 판결

문 낭독 끝에 유죄임을 밝히고 “징역3년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한다”는 말이 미쳐 끌 걸리지 낭독을 듣다가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알고는 술렁이기 시작.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퇴정하기 위해 일어서자 한 방청객은

“조각극 승리로 기록하라”

○…강씨의 가족과 전민련 신창균 의장 등 재야인사를 비롯,

방청객 1백여명은 재판이 시작되자 숨을 죽이며 재판장의 판결요지 낭독을 듣다가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알고는 술렁이기 시작.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퇴정하기 위해 일어서자 한 방청객은 법정 앞으로 뛰어와 “판결문이 모호한데 어떻게 유죄를 내려?” “어디 압력을 받았어?” 라며 고함을 치자 정의의 제지권을 받았다.

민가협의 한 회원은 얼굴이 형광이 검찰의 입장을 악화시킨 상기된 채 보도진들에게 큰 목소리로 “조각극의 승리로 기록해 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편 지난주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는 몸이 아파 판결선고 뒤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방청객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유죄판결을 직감한 듯 굳게 입을 다물었다.

강씨 어머니 망연자실

○…이날 공판에는 강씨의 어머니 권태평(57)씨, 동생 기천(24·포항공대 박사과정)씨 등 가족들이 대부분 나와 방청했으나 아버지 강태열씨는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법정에 오지 못했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재판시작 전 어머니 권씨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할 수 없지만 유서대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재판을 진행해 온 재판부의 태도로 볼 때 불안한 마음을 갖출 수 없다”면서 초조해 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유죄가 확실시되자 권씨는 “세상에” “말도 안돼”라는 말을 되뇌이다가 선고되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3분여동안 자리에 앉아있었다.

재판장, 강씨 외면한채 시종 무거운 표정

방청객들 판결문낭독되자 유죄직감 ‘슬링’

검찰, 선고랑에 불만

○…검찰은 강기훈씨의 유죄가 선고되자 “유죄는 당연하다”는 안도의 반응과 함께 재판부의 양형에 큰 불만을 표시. 이 사건 수사책임자인 서울지검 형사1부 강신육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자살방조에 대해 유죄 선고할 것은 이미 예견했다”면서도 구형량의 반도 안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국과수, 그 실상을 파헤친다

1948년 와세다 대학 예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1951년 일본 경시청의 의뢰에 의해 필적감정
1974년 일본 경시청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필적감정부문 개인 감사장 수상
1988년 일본 공업대학 강사(미술사·예술학) 정년퇴직.
현재 감정인협회 대표감정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회, 일본기독교 협의회로부터 필적감정을 의뢰받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달하였으므로 이에 회답합니다.

1991년 7월 9일

東京部杉並區上荻 3-13-21
東京國立博物館名譽館員
감정인 : 大西芳雄(오니시 요시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회
일본기독교협의회 귀하

감정사항

1. 하기(下記) 1의 유언서의 필자는 누구인가?

① 유언서	2통(사본)
② 수첩	4장(사본)
③ 강기훈 본인의 옥중으로부터의 필적	2통
④ 강기훈 본인의 최근 필적	1통
⑤ 숭의여전 메모	1통
⑥ 방명록 노트(연필로 표시한 부분)	1통
⑦ 상황일지(연필로 표시한 부분)	1통
⑧ 봉투(연필로 표시한 부분)	1통
⑨ 이력서	1통(사본)

위의 ②와 ⑤~⑨의 필적은 김기설의 것이다.

감정 주문 및 이유의 본문에 나오는 감정자료는 위에 나오는 ○안의 숫자로 표시하기로 한다.

감정주문

① 유언서의 필적은 ② 및 ⑤~⑨를 쓴 김기설의 필적과 특색이 공통되어 있으며 김기설이 직접 쓴 것이다. 강기훈이 쓴 것은 아니다.

감정이유

①의 2통의 유언서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2통의 유언서의 필적은 패선(臘繕)이 없는 백지에 만년 필과 같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획서(橫書)로 써어져 있으며, 맨끝에 각각 서명이 되어 있다. 획서의 각 행을 보면 2통 모두 가로 일직선으로 쓴 것과 말미를 상하로 올리거나 내린 것 등 도합 3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문절(文節) 및 각 행간의 간격도 넓고 좁음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

각 문자는 해서(楷書)체가 아니라 속필(速筆)을 사용한 행서(行書)체로 되어 있으며 각 자획선(字劃線)에 주저함의 흔적이 전혀 없어 선(線)에 늘임이 있는 것이 인정된다.

각 문자의 결체를 보면, 종선(縱線)을 하방(下方)으로 길게 늘이는 필벽(筆壁)이 보이며, 일정한 길이로 가지런하게 되어 있지 않고 들쑥날쑥하게 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각 자획선의 필법을 보면 획선(橫線)에서는 직선적 필치(直線的 筆致)로 수평으로 쓰는 필법을 다용(多用)하고 있다. 종선에서는 직곡선적 필치(直谷線的 筆致)로 수직방향 이외에도 좌하방(左下方)으로 사선(斜線)을 그어내리는 두 가지 종류의 필법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감정자료의 김기설이 쓴 ②의 필적은 수첩 4장 중에서 앞의 2장은 전화번호부, 뒤의 2장은 일기장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 볼펜류의 필기구로 그때그때 획서로 각 문자를 난잡하게 작게 쓴 것이다. 각 문자군(文字群)은 수평 아니

면 극단적인 끝올림(역주: 문장 말미가 올라가도록 쓴 것)으로 써어져 있으며, 해서(楷書)체 또는 행서(行書)체로 흘려 쓴 것으로, 한번 쓴 것을 지우고 고쳐 쓴 흔적 등이 나타나 있다.

자료 ⑤의 필적은 김기설이 숭의여전의 총학생회장에 써 준 집회의 일정 메모로서, 볼펜을 사용하여 급히 쓴 것으로 각 문자를 속필로 행서체로 흘려쓰고 3개조(組) 중에서 최초의 2개조를 극단적인 끝올림으로 썼으며 최후의 한 조는 원만한 각도로 쓰고 있다.

자료 ⑥의 필적은 방명록 용의 노트에 볼펜으로 속필을 사용하여 비교적 또박또박한 행서체로 써여져 있다.

자료 ⑦의 필적은 1989년 9월 25일의 행동을 일지로 쓴 것을 각 문자를 정성껏 해서체로 쓰고 있다.

자료 ⑧의 필적은 봉투 뒷면에 사인펜으로 5문자를 획서로 쓰고 있다.

자료 ⑨의 이력서 필적은 해서체를 사용하여 정성껏 써어져 있다.

김기설이 쓴 각 문자의 필법을 보면, 획선에서는 직선적 필치로 수평으로 쓰는 필법을 다용하며 종선에서는 직곡선적 필치로 수직과 좌하방으로 경사하는 두 가지의 필법을 혼용하고 있다.

자료 ③과 ④는 강기훈의 옥중에서 쓴 2통의 봉함엽서의 필적과, 1992년 5월 21일 편지지 1장의 앞뒤에 쓴 필적의 두 종류이다.

옥중에서 쓴 편지는 봉투의 소인이 1987년 6월 8일과 동년 5월 7일의 것으로 어느 것이나 패선이 있는 편지지에 볼펜으로 획서로 각 문자가 써여져 있다. 별도로 금년 5월 21일에 패선이 있는 종이에 볼펜으로 획서로 쓴 것은 어느 것이나 속필로 정성껏 행서로 써여져 있다.

3개조의 각 문자의 배자(配字)를 보면, 작성연대와 관계없이 종횡 10mm의 크기로 크고작음의 흐트러짐이 있으며, 감정물건(鑑定物件)과 같이 말미를 상하로 치우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로 일직선으로 써어져 있고, 문절간의 간격도 일정한 간격으로 정연하게 되어 있다.

각 문자의 필법을 보면, 종선에서는 직선적 필치를 다용하여 수직과 우하방(右下方)으로 경사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고, 종필(縱筆)을 가압하지 않고 빼쳐내리는 필법을 다용하고 있다.

이들 일련의 필적 중에서 특히 고유필법(固有筆法)을 사용하여 항상성(恒常性)을 나타내는 개성표현(個性表

現)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하의 점을 들 수 있다.

1) 「사선(斜線)」의 필법에 관하여

각 문자의 최초의 제일획(制一劃)의 짧은 사선의 필법을 기본적으로 「하」 「하」 「하」 「하」 「하」 와 같이 일반적으로 5가지로 분류되며, 이 사선을 직선·곡선적 필치로 길고 짧게 쓰며, 여기에 필압의 가감이 작용하여 매우 변화된 필법을 사용하여 개성표현이 잘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개성표현의 필법의 구별을 찾아내는 것이 감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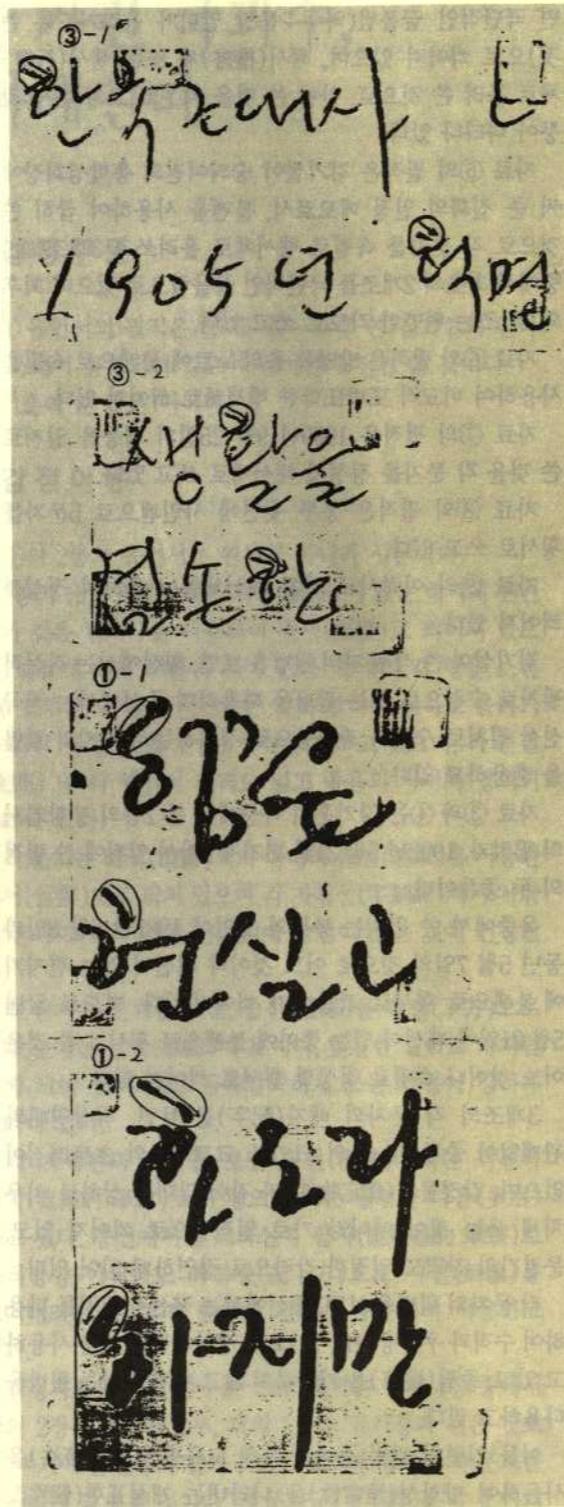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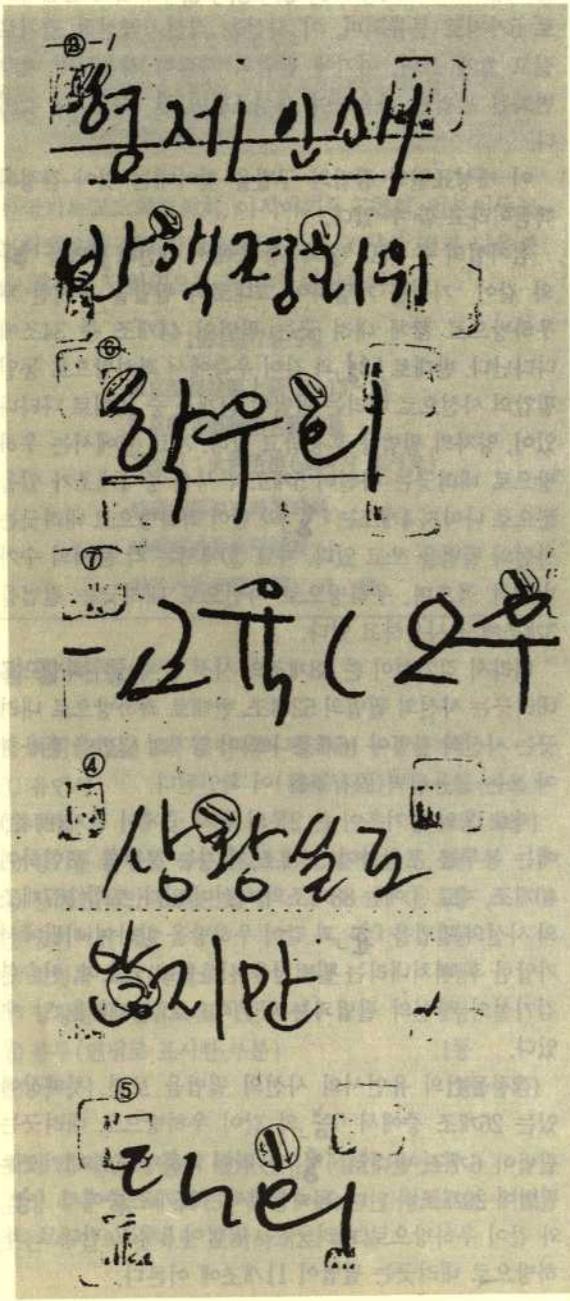
김기설의 쓴 자료 ②의 4장 중에서 사선의 필법을 「하」 와 같이 기필을 가압하여 그대로의 필압을 유지한 채 우하방으로 짧게 내려 굿는 필법이 44개조 중 34조에 나타난다. 반대로 「하」 와 같이 우측에서 좌하방으로 동일 필압의 사선으로 내리는 필법이 44개조 중 10개로 나타나 있어, 양자의 필법을 혼용하고 있다. 자료 ⑥에서는 우하방으로 내려 굿는 사선이 5개조의 사선 중 1개조가 있을 뿐으로 나머지 4개조는 「하」 와 같이 좌하방으로 내려 굿는 사선의 필법을 쓰고 있다. 자료 ⑨에서는 각 문서의 수가 비교적 적으며, 우하방으로 사선으로 내려 굿는 필법을 3개조에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기설이 쓴 68개조의 사선 중에서 우하방으로 내려 굿는 사선의 필법의 52개조, 반대로 좌하방으로 내려 굿는 사선의 필법이 16개조나 되어 양자의 필법을 혼용하여 쓰는 고유필법(固有筆法)이 확인된다.

자료 ③의 강기훈이 쓴 2통의 편지 중에서 전자(前者)에는 봉투를 포함하여 36개조, 후자는 봉투를 포함하여 40개조, 자료 ④에는 88개조의 사선이 있다. 도합 167개조의 사선의 필법을 「하」 와 같이 우하방을 향하여 기필에서 가압한 후 빼쳐내리는 필법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술한 김기설의 사선의 필법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감정물건의 유언서의 사선의 필법을 보면, 첫째장에 있는 26개조 중에서 「하」 와 같이 우하방으로 내려 굿는 필법이 6개조, 반대로 「하」 와 같이 좌하방으로 내려 굿는 필법이 20개조나 된다. 둘째장에서는 16개조 중에서 「하」 와 같이 우하방으로 내려 굿는 필법이 5개조, 반대로 좌하방으로 내려 굿는 필법이 11개조에 이른다.

내용이 상이한 2장의 유언서의 사선의 필법을 보면, 42개조 중에서 우하방으로 내려긋는 필법이 11개조, 반대의 필법이 31개조로 각기 혼용되고 있으며 자료에 든 김기설의 사선의 필법과 특색이 공통되고 있다. 강기훈의 사선의 필법과는 명확히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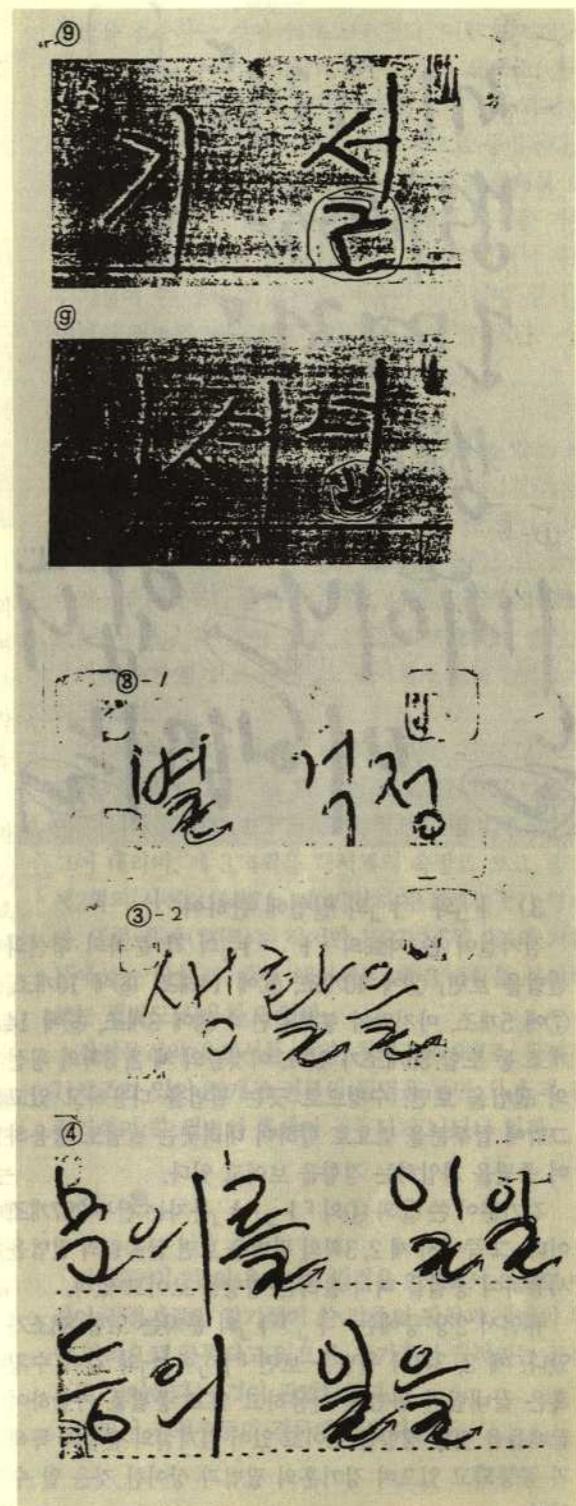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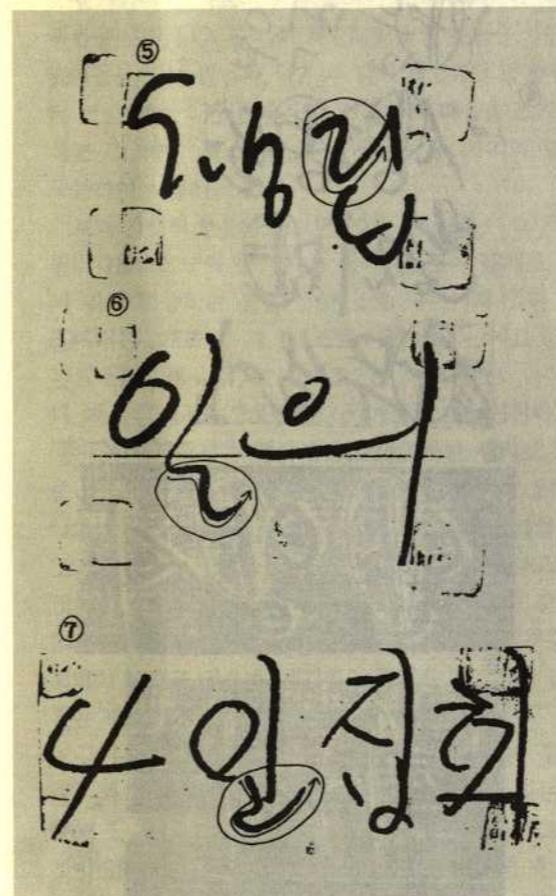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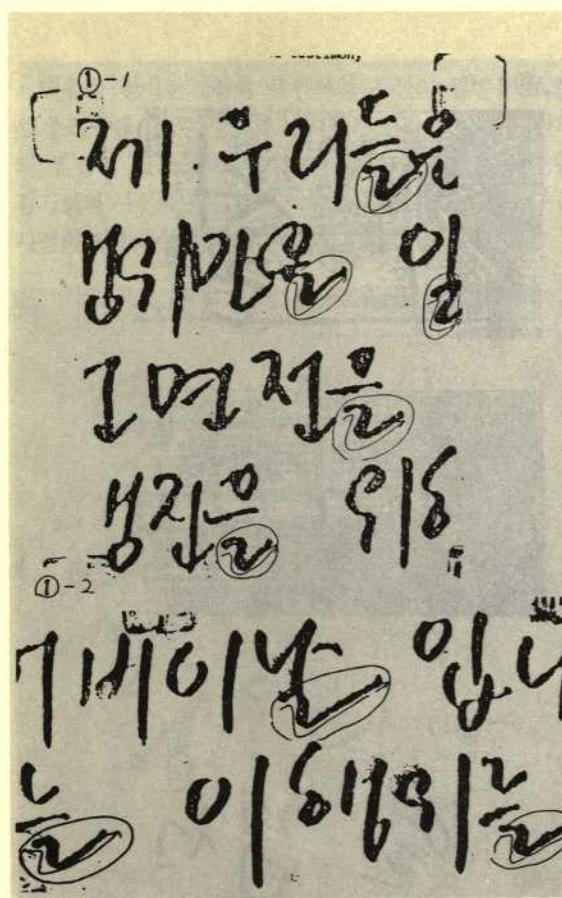
2) 「르」의 필법에 관하여

자료의 문서 중에서 「일」 등의 받침 「르」의 필법을 보면, 김기설이 쓴 ②에는 14개조, ⑤에는 4개조, ⑥에는 3개조, ⑦에 1개조, ⑨에 4개조 등 함께 26개조가 있으며 모두가 「ㄹ」과 같이 제2획의 횡선을 생략하여 제 1, 2, 3획을 한 획으로 단번에 쓰며 제3획을 끝을 림의 횡선으로 빼쳐 올리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강기훈이 쓴 받침 「르」은 ③에 58개조, ④에 84개조가 있으나 모두가 「ㄹ」 「ㄴ」과 같이 제2획의 횡선을 가필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감정물건인 유언서의 「르」 문자의 필법을 보면, 첫째장에 20개조, 둘째장에 14개조가 있는데, 모두가 「ㄹ」과 같이 제2획의 횡선을 생략하고 단숨에 쓰고 있어 김기설의 필법과 특색이 공통되고 있으며, 강기훈의 필법과는 상이함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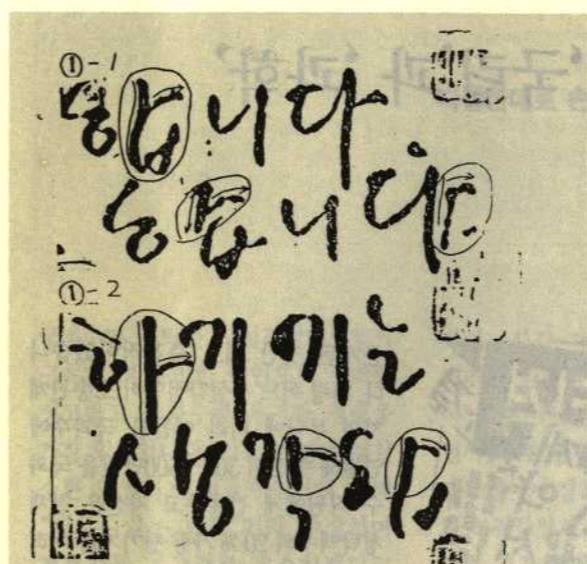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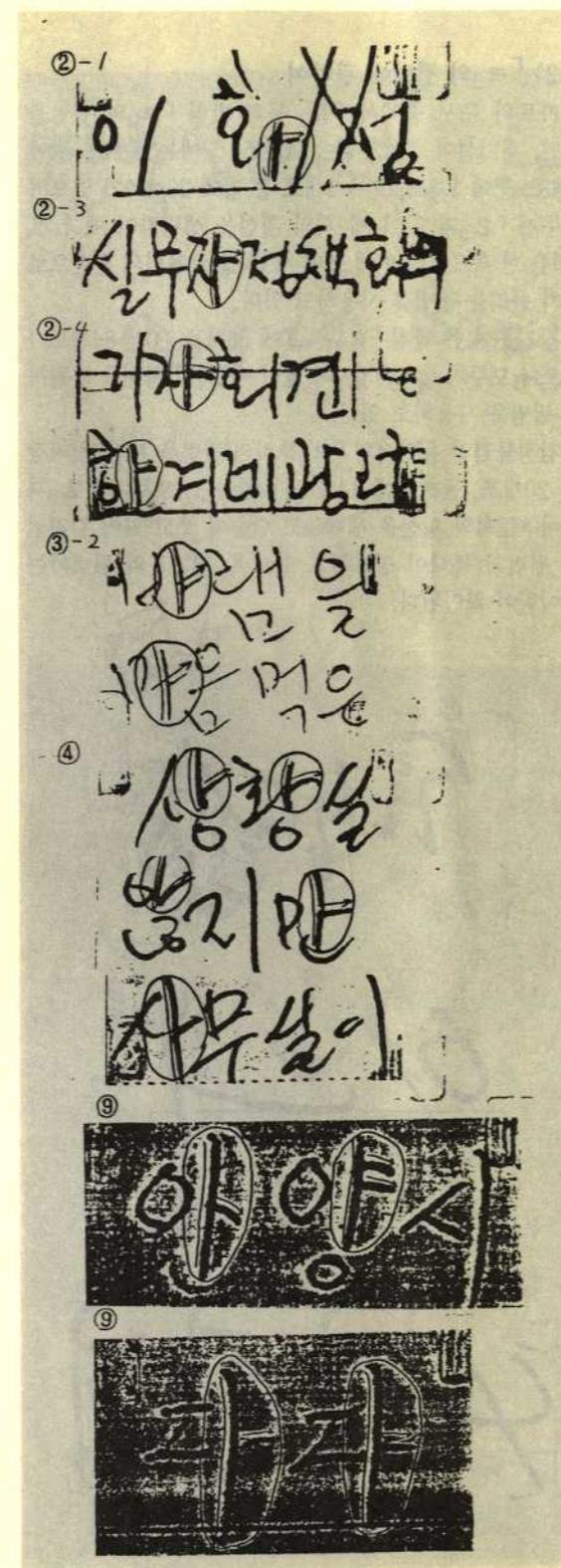


3) 「나」와 「ㅏ」의 필법에 관하여

김기설이 쓴 자료의 「나」「ㅏ」의 각 문자의 횡선의 필법을 보면, ②에 40개조, ⑤에 14개조, ⑥에 10개조, ⑦에 5개조, 마지막의 봉투곁면의 ⑧에 3개조, ⑨에 14개조 등 도합 86개조가 있다. 이것들의 제 2, 3획의 횡선의 필법을 보면, 수평으로 굿는 필법을 다용하고 있고 그밖에 끝부분을 밑으로 향하여 내려굿는 필법도 병용하여 종필을 가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기훈이 쓴 ③과 ④의 「나」「ㅏ」문자는 전부 297개조이다. 그 중에서 제 2, 3획의 필법을 보면 끝올림의 필법을 사용하여 종필을 빼쳐 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언서 2장 중에는 「나」「ㅏ」의 문자는 도합 83조가 있다. 제 2, 3획의 필법을 보면 「나」「ㅏ」와 같이 수평 혹은 끝내림의 필법을 사용하고 있고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을 짓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김기설의 필법의 특색과 공통되고 있으며 강기훈의 필법과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4) 「ㅁ」의 필법에 관하여

김기설이 쓴 자료의 문자 중의 「맘」과 같이 「ㅁ」부분의 필법을 보면, 「17」과 같이 제 2획을 굽혀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을 짓는 필법과, 「12」과 같이 제 2획의 종필에서부터 전중(轉重 : 펜을 떼지 않고 겹쳐서 다음을 쓰기 시작하는 것)하여 제 3획으로 이행하는 두 가지의 필법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분류하여 보면, 자료 ②에서는 「ㅁ」부분의 필법 18개조 중에서 「17」과 같이 쓴 것이 12개조, 「12」과 같이 전중하는 필법이 6개조로 나뉘어져 있다. 자료 ⑤에서는 2개조 중 각 1개조로 나뉘어진다. 자료 ⑥에서는 5개조 중에서 「17」가 1개조, 「12」가 4개조로 나뉘어진다. 자료 ⑦에서는 2개조 중 각 1개조로 나뉘어진다. 자료 ⑨의 이력서에서는 해서체의 또박또박한 필치로 5개조 중 4개조를 「ㅁ」과 같이 쓰고 있으며, 마지막 1개조를 「12」과 같이 행서체로 바꾸어 쓰고 있다. 김기설이 쓴 32개조의 「ㅁ」 부분을 보면, 이력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4개조를 「ㅁ」과 같이 쓴 것과, 「17」과 같이 제 2획의 종필을 끝매듭짓고 있는 것이 15개조, 전중하는 필법이 13개조 있으며, 제 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을 짓는 필법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강기훈이 쓴 ③에서는 「ㅁ」부분이 81개조가 있는데, 「17」과 같이 제 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짓는 것이 30개조, 제 2획의 종필을 전중하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51개조이다. ④에서는 전부 60개조 있는데 제 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짓고 있는 것이 16개조, 제 2획의

종필을 전중하는 것이 44개조나 된다. 이를 합계하면 제 2획의 종필을 가압하여 끝매듭짓는 것이 46개조, 종필을 전중하는 것이 96개조로 후자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어 김기설이 쓴 필법과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증명된다.

감정물건인 유언서의 「ㅁ」부분의 종필의 형태를 보면, 첫째와 둘째 장에 나오는 42개조 중에서 종필을 가압한 것이 32개조, 종필을 전중하는 것이 10개조이어서 자료의 김기설이 쓴 종필과 필법의 비율이 합치하며 강기훈의 종필의 필법의 비율과는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5) 「ㅂ」의 필법에 관하여

김기설이 쓴 자료의 「ㅂ」의 각 문자의 필법을 보면, ②에 18개조, ⑤에 5개조, ⑥에 2개조, ⑦에 4개조, ⑨에 10개조 등 합계 39개조이다. 이들 모두가 제 1, 2획의 종선을 평행이 아니라 곡선적 필치로 안쪽으로 굽혀서 내려긋고 제 2획의 종필에서 제 3, 4획을 연속필기(連續筆記)로서 「ㅂ」과 같이 쓰며, 종필을 제 2획의 종선보다 우외측(右外側)으로 돌출되도록 빼쳐 올리는 필법을 사용하고 있다.

강기훈이 쓴 ③, ④의 「ㅂ」의 문자는 전부 121개조이다. 그 중에서 「ㅂ」 「ㅍ」과 같이 제 1, 2획의 종선을 수직이 아니라 우하방(右下方)으로 직선적 필치의 사선으로 그어 내리며, 제 3, 4획을 행서체의 속필로 쓰고, 종필을 제 2획의 사선상(斜線上)에 가압하여 끝매듭짓는 형태이다. 또한 유례(類例)는 적지만 1987년 5월 7일의 처음부분에서는 「ㅂ」과 같이 해서체로 제 3, 4획을 분리하여 쓰는 필법도 사용하고 있다.

감정물건의 유언서를 보면, 첫째장에 9개조, 둘째장에 11개조가 있어 20개조 전부의 필법을 보면, 「ㅂ」과 같이 김기설이 쓴 필법과 특색이 공통되게 나타나 있다.

결론

감정물건인 2통의 유언서의 필적은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감정자료인 김기설이 쓴 각종의 필적과 필법의 특색이 전적으로 공통되고 있으며, 강기훈의 필적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감정주문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상.

마각을 드러낸 '국립'과 '과학'



지난 2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 사설감정원과 결탁, 거액의 뇌물을 받고 지문, 인장 등의 허위감정을 해온 사실이 폭로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은 17년 동안 계속되어 온 대전지역 유지들 사이의 알력과 송사

에 따른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싸움의 한 당사자인 조병길씨의 국과수 감정비리에 대한 끈질긴 추적은 이 사건을 정치문제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병길씨는 상대편 우두머리인 이세용씨가 사설감정인들과 국과수를 끼고

전문적으로 재산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고 오랫동안 녹음기를 몰래 휴대하여 사설감정인들을 찾아다니며 감정을 의뢰하는 척 열심히 국과수와의 관계를 캤던 것입니다. 테이프의 분량은 약 6시간입니다.

이번 국과수 허위감정사건의 '주인공'은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 육안으로 보아도 같을 수 없는 고 김기설열사의 유서와 강기훈씨의 필적을 "같다"고 우겨댄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는 80년에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결국 같은 국과수 동료직원이었던 이인환씨(이번 사건에서

공개된 것만 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령 어느 사설감정인이 소송관계자의 부탁에 따라 이들을 국과수에 연결해 주면서 300~500만원을 국과수 직원에게 건네주고 자신은 전체 청탁액수의 20% 가량 쟁기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등 참으로 생생한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돌았던 이야기들, 즉 문서위조때문에 재산을 뭉뚱 빼앗기고 억울해서 고소하면 다시 국과수에서 똑같은 감정결과가 나와 어김없이 무고죄로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실화'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국과수는 오랫동안 재판의 왕, 아니 폭군이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을 검증할 또 다른 '국립'과 '과학'이 없기에 재판부는 언제나 국과수의 판단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관이 눈으로 보아도 분명히 위조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알고 속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MBC에 제보했으며, 그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적을 벌였던 MBC는 17시간 분량의 비디오 촬영을 축적했습니다. 뉴스 화면으로 공개된 것은 그 중 1~2%에 불과하며, 취재한 기자 말에 의하면 그것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뇌물을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고 다급한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놓은 검찰은 보나마나 항소심에서 '돈 먹은 김형영씨의 결백'을 주장하겠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의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국과수와 결탁한 사설감정인으로서 구속됨)의 유리한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국과수에 복귀한 경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이번에 검찰 소환 직전까지 뇌물수수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모함"이라 주장하며 제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펼펄 뛰다가 나중에야 시인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국과수를 낸 전문 문서위조단이 있다는 익명의 투서를 받고 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한 것은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씨가 그 우두머리라는 상당한 심증을 굳히기에 이른 경찰이 그러나 3개월만에 내사를 종결해버린 것은 순전히 검찰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세용씨의 하수인을 잡아다 죽친 경찰에 대하여 "검찰 수사전에 대한 도전"이라고 분노하면서 경찰관

5명을 도리어 연행조사까지 했던 검찰의 시퍼런 서슬은 분명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의 결탁 혐의가 드러나자 '유서사건'을 의식한 데서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사건' 1심 공판 기록에도 김형영씨가 검찰과 담합을 하면서 필적을 감정한 사실은 잘 드러나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경찰 내사 과정은 검찰과 국과수의 검은 유착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사 과정에서 김형영씨의 혐의가 드러나 경찰은 1월 중순경 그를 연행

하여 1시간 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형영씨는 이 사실을 다름 아닌 '유서사건' 담당부인 서울지검 형사1부로 연락했으며, 이에 발끈한 간부검사가 경찰간부에게 "만약 김씨가 허위감정과 관계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경찰 몇명은 옷벗을 각오를 하라"고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한겨레신문>, 2월 19일자).

국과수 감정비리사건에 처음에는 미지근한 태도를 취했던 검찰은 그것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갑자기 본격수사로 전회하더니 이내 "뇌물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처음 보도된 지 열흘 남짓, 이 엄청난 사건의 보도는 신문지상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검찰의 초기 수사종결과 비상식적인 궤변은 누가 보아도 '유서재판'에 대비한 허위감정 사실의 은폐기도 임이 분명하며, 조병길씨 구속은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제보를 막아보자는 치졸한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누구의 눈에도 명백히 보이는 사실을 공권력이 덮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공권력이 양식과 진실에 입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을 혹이라 우기고 고 김기설 열사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썼다고 우기는 공권력의 이른바 위신이라는

어차피 폭력에 의해 가리워진 국과수 허위감정 비리사건은 바닥까지 파헤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선 '뇌물을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고 다급한 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놓은 검찰은 보나마나 항소심에서 '돈 먹은 김형영씨의 결백'을 주장하겠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의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소위 허위감정을 해줄 뜻이 없으면서도 돈을 먹었다는 파렴치한 사기꾼의 증언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실은 당당히 행군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파렴치와 억지 속에서도...

제자와 주
과 같다.
합의서 발효
인권(이장)
▲ 국제인
택의 정서에
▲(조용환·
권호사모임)
기본권(파정
소소장) ▲
재일한국인
제 활동의
하·민족차
협의회 공동

언론 개처

방문한 것
문 광고, 학
직투쟁을 통
험위한 홍보
는 11일 성
1 이번 조치
금지법의 제
로 확대해석
원 및 후원회
 따른 조합
계지원비는
법의 적용을
'동료교사들
가져 원천봉
간적 탄압을
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이 사설감정인 및 문서위조단과 결탁하여 허위감정을 해왔다 고 한다.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이번 사건의 진상도 흐지부지 오리무중의 안개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며 뒤늦게 발견된 빙산의 일각이라는 선입견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 의혹의 핵심으로 떠 오른 그 문서분석전문가는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에서 김기설씨의 유서가 강기훈씨의 필적과 같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재판에서 한 그의 증언을 몇 마디 들어보면 이번 허위감정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문: 증인은 각 필적감정서를 작성할 때까지 검찰측을

"문: 상식적으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주장되는 부분이 과연 원래의 책자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 보기 위하여는 책자의 총면수, 책자의 제본방법, 떨어져 나간 부분의 면수 및 남아 있는 흔적의 면수, 위치 등을 검사해야 하지요." "답: 그런 것은 별로 중요치

오늘 이야기



조 용 환
(연맹 고문변호사)

'허위감정'은 예견된 일

비롯한 누구의 조언이나 설명을 들은 바 없이 오직 증인에게 제시된 필적자료만에 의하여 증인의 경험과 양심에 따라 필적감정을 행하였나요?" "답: 예."

"문: 그런데 증인이 한 감정사항은... 본래의 감정의뢰 사항과 다르게 감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각각 이동여부를 감정하려면 복잡하므로 검사에게 전화해 '얻어야 할 목적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유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그렇게 감정한 것입니다."

"문: 증인은 (전민련업무일지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답: 검사가 얘기하였습니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떨어져 나간 면수가)

4매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나요?" "답: 검사로부터 감정할 무렵에 들었습니다."

"문: 검찰에서 의뢰할 때 추가자료가 책자글씨와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답: 예."

이렇게 '검찰측을 비롯한 누구의 조언이나 설명을 들은 바 없이' 감정한 그는 김기설씨의 필적과 강기훈씨의 필적이 같다고 판단한 '과학적인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다'라고 하여... 그렇게 감정한 것입니다."

"문: 증인은 필적감정 모두에 있어서 필법상의 유사비율에 관한 감정기준 근거자료를 증인이 감정한 감정서에 첨부하는 바도 없고 증인이 근무하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문서분석실에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지요."

"답: 예, 그것은 감정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감정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거나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건 필적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필법상의 유사비율문제는 모두 증인의 머리속에서 보고 계산하고 현재 또한 증인의 머리속에만 기억되어 있나요?"

"답: 그 당시 계산하고 분석하여 그렇게 판단했고 지금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나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증언만을 듣고도 위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런 감정을 하게 하였고 법원은 오직 위 감정만이 믿을만하다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선고하는 동안 배석판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언론은 전하고 있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강철처럼……”

영미에게.
내가 보낸 新年 Card는 平和의 메세지와 함께 잘 받았는지 궁금하구나. 나이 하나가 追加되니 몸도 마음도 더욱 성숙해지고, 좋은 일만 계속되는 한 해가 되기를 빌어본다.

허위를 진실로 가장하여 한 유태인 대위를 종신형에 처하게 하고 몇 년 후에 한 대령의 손에 의해 진실이 한꺼풀 벗겨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국가권력에 의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共犯들이 하나 둘 늘어갔음을 우린 알고 있다. 매우 불행한 일이었고 예전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어이없고 허망한 100년 전의 오류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모두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화되었다. 검찰·국과수에다가 法院까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합세한 양상은 어쩌면 그렇게도 100년 전의 프랑스를 닮아가는지.

날씨가 계속 흐리구나. 토, 일까지는 비교적 푸근하고 맑은 날들이었는데 오늘은 하늘까지 금방이라도 눈이나 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침침하고 짜·한 가운데에 있구나. 한동안 뜯음하더니 얼마전부터 왼쪽 무릎과 오른쪽 갈비뼈가 조금씩 쑤시기 시작한다. 옛날에 조금 심하게 맞은 부위인데, 한 몇 년간 전혀 의식을 하고 살진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재발하였으니 궂은 날마다 괘씸 못한 기분에 휩싸여 지내게 될 것 같다. 이런 쪼그만 느낌은 강추위나 폭서보다는 더욱 날 괴롭힌다.

강박과 어떤 의무감에서 탈까. 끝내 침착하고 자제하려 애를 썼는데도 위험수위에까지 갈 정도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고, 고립감과 슬픔 때문에, 그리고 한가닥이나마 믿고 싶었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20일 오전 약 1시간 가량은 느껴야 했다. 여기에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명한 가운데 넋나간 듯 앉아 있었고, 이런 상태를 남들에게 내보이기가 싫어 특유의 Card face로 가장해 보려는 노력도 허사였는가 보다. 주위의 안다가운 시선을 좌우사방에서 받으며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로 규정받아야 하는 자의 심난함을 이제 이해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새로운 현실인식을 갖게 되었다.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강철처럼 얹어맞고 고통을 받을수록 내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투자는 이러한 변화하는 인식과 그 계를 같이하고 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 여기저기서 울리는 동료들의 분노에 찬 함성은 다시 싸워보자는 의지를 불태우게끔 하는 것이다.

신문에 난 “거지……” 云云이 유행어가 될 것 같다. 화가 났을 때 자주 쓰던 내 특유의 言語인데.

천부적 글쟁이인 서선배의 글을 보며 그의 뜨거운 마음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다. 차가운 듯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多感한 사람만이 그런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위로 받았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 또 첫 재판과는 달리 일정의 무게를 더해 대처해 나가노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겠지? 그렇게 믿어보자꾸나. 원래 눈물이 많은(그것보다는 콧물이 더 많겠군) 네가 20일 밤에 조금은 훌쩍거렸을 것 같아 내 일신의 안위와 함께 자꾸 눈 앞에 밟혔는데,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내 쟁고가 효력이 있었는지 면회장에선 여전히 방식방식 방글방글이더구나. 장래의 장인 장모님도 충격을 받으셨을 듯하고. 마음 한 귀퉁이에 오랜 시간 남아 있을 상처가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한 해가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의 半 이상을 담장 안에서 보내고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관조하게 된 날씨평론가 아닌 날씨평론가의 人生도 참 서러울 정도로 한심스럽기만 하구나. 지난 몇년전의 20개월(86년은 외부의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했다)과 얼마가 될 지 모를 앞으로의 우물안 개구리 신세로 황금의 20代를 거지반 가까이 양쪽 볼기짝이 문드러질 정도로 앉아서 서러움을 섭어야 할 지 모르겠다. 1심대로라면 94年 6月末. 네가 29, 나는 31세가 되는 해. ‘설마’하는 막연한 기대감은 어쩌면 악한 세월을 만나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치의 각오는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기쁨은 언제 어느 때라도 기꺼운 자세로 맞닥뜨릴 수 있지만 기대가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은

우리 쪽에서 절세없이 내뱉는 스트레이트와 좌우 연타는 모두 빈تا로 처리해버리고 헛스윙 한 방을 유일한 유효타로 처리해 판정승을 선언하는 심판관들의 폭 수그린 얼굴을 바라보며 한 개인의 명예를 공의의 이름으로 박살내버린 자의 박살내버린 자의 의기양양함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은 내 주관적인 관찰은 아닌 것 같구나. 그렇다. 그들도 내심으로 자신들의 판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앞서 그들의 어깨와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하중이

20일의 폭 수그린 자신없는 태도를, 그리고 엉터리 판결을 유도한 것이다. 한 인간의 나여림과 잔악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영화와 같은 장면이었다고나 할까. 예전에 말했듯이 이런 모든 사실들은 장래 태어날 내 자녀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짓게끔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의 한 대목이 될 것이다. <내 딸은 철들 무렵 나에게 묻는다.“아빠는 왜 그때 감옥 안에 있었어요?” 나는 대답한다.“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국가권력은 내가 바깥보다는 안에 있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다시 “요즘엔 그런 일은 없지요?” 나는 “그래 아빠와 그때 당시의 많은 사람들의 회생과 분투 탓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후에 없어졌고, 어쩌면 국가권력도 진실을 알고서는 반성을 많이 했거든.” 또 허무한 소설을 쓰고 말았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네가 결혼하자고 조를 때 못이기는 척 따라줄 걸 그랬나 보다. 심심함을 참지 못하는 네가 잠깐의 대화 속에서만 나의 의견을 듣고 돌아서면 쌩길 온갖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기 때문에 필력이나 화력(話力)이 없는 게 안타깝다. 많이 후달린 탓인지 조금은 야원 것 같은 네 얼굴을 대하며 두터운 신경줄을 생각하며 안심하다가도 차마 표현 못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어리저리 굴려서 표현해야 하는 처지에 놓임을 조금은 악소리를 내면서라도 털어버리고 밖아오는 아침해를 바라보자. 우물안 개구리도 유난히 짙어진 해를 탓하기 앞서 그래도 태양은 떴다가 진다는 소박한 진리를 몇 번이고 되뇌이며 우물 밖으로 나갈 날을 묵묵히 기다리겠다.

너를 사랑한다.

1991. 12. 23.

구금 6개월이 되는 날 의왕시 포일동에서

기훈 씀

고난받고 있는 강기훈씨를 도웁시다

『유서사건』 강기훈씨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즈음하여

지난해,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의하여 강경대 학생이 타살된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의 폭력에 항의하는 국민적 분노의 함성이 무섭게 물결쳤다. 그 분노의 물결이 절정에 이른 무렵, 폭력정권에 항의하여 분신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고 김기설씨의 유서가 대필된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이 검찰로부터 언론에 유포되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후 강기훈이라는 젊은이가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자살방조자가 되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강기훈씨가 구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주변 여러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또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서를 대필한 시기는 물론 장소와 경위를 밝히지도 못한 채 강기훈씨를 구속 기소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치권력이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고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강기훈씨의 결백이 입증되어 그의 인권이 끝내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강기훈씨에 대한 1심 재판의 결과는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짓밟았다. 재판부는 마땅히 기각하여야 했을 강기훈씨에 대한 검찰의 막연하고 부실한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비슷해보이는 글씨 몇개만을 골라 확대비교해 놓은 것에 불과한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유죄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버렸다. 반면에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득력있는 근거를 열거하면서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일본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극히 사소한 문제를 트집잡아 외면했다. 더구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한 홍성은씨의 법정증언 대신에 검찰에서의 불법적 강압수사 아래 이루어진 진술을 채택해버림으로써 법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팽가치고 권력의 요구에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 판결은 비약과 억측과 강변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강기훈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무고한 개인의 양심과 결백이 거대한 공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앉아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강기훈 공대위’는 강기훈씨의 무죄석방을 목표로 항소심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운동, 유서사건의 진상과 강기훈의 결백을 알리는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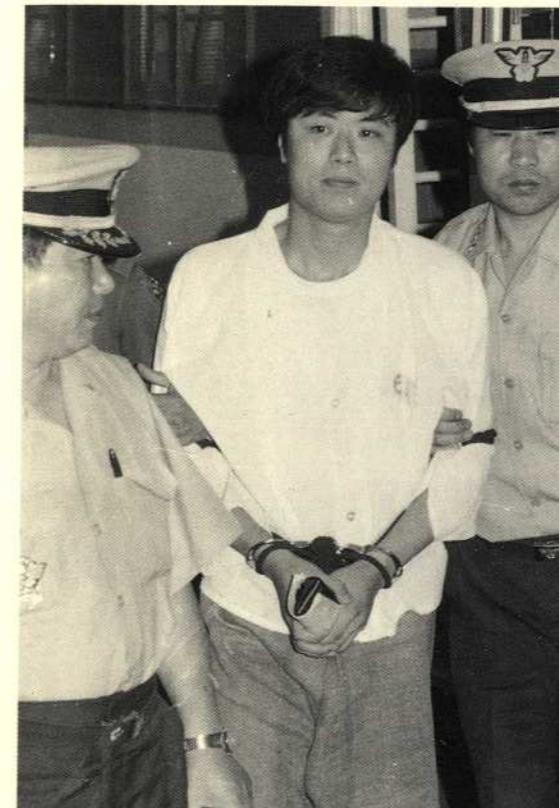
최근 국과수의 허위감정비리가 드러나 온 국민을 경악시킨 바 있다. 허위감정비리의 주범인 김형영(국과수 前문서분석실장)이 강기훈씨를 유서를 대필했다고 감정한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이제 강기훈씨의 결백은 더욱 분명해졌다. 강기훈씨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그동안 훈 것을 겸은 것이라 우려온 세력들은 심판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 양심과 비양심,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결국 양심과 진실이 승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강기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양심과 진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1992. 2. 27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신부 함 세웅

정의와 진실의 대장정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강기훈씨는 지난해 5월 검찰이 만들어낸 소위 「유서대필사건」의 희생양이 되어 1심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강기훈씨의 항소심을 앞두고 그의 양심과 결백을 믿고 있는 우리는 무죄석방을 위해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심과 진실의 승리를 믿는 보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위해 『『강기훈후원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강기훈후원회』』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공권력에 맞서 외롭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 강기훈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무죄석방을 위한 활동에도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감정한 국과수의 허위감정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강기훈씨의 결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처럼 유죄판결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어떠한 신뢰와 희망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강기훈의 결백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양심과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건전한 상식을 믿을 수 있도록 부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신부 함 세웅

후원금 : 1만원 이상(후원회원에게는 대책위에서 제공하는 소책자, 공판소식 등 자료를 즉시 보내드립니다)

구좌번호 : 국민은행 : 003-01-0570-152, 상업은행 : 119-05-119332, 농협 : 084-01-132153 강기훈

연락 및 문의처 : 전화 : 745-9564, 743-9127-8, FAX : 742-8289

위원장 : 함 세웅 고문 : 계홍제, 곽병준, 김승훈, 박용길, 박종기, 박형규, 백기완, 송월주, 신창균, 이돈명, 조화순, 한승현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